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학석사 학위논문

헌법상 균등(均等) 개념에 대한 연구

-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관련하여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 전공

유 경 민

헌법상 균등(均等) 개념에 대한 연구

-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관련하여 -

지도교수 송 석 윤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 전공

유 경 민

유경민의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균등’(均等)이라는 단어를 모두 네 차례 사용하고 있다. 우선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여 균등을 거듭 강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을 명시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 역시 강조하고 있다(제116조 제1항). 또한 경제의 장에서는 비록 균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균형’이라는 단어를 무려 다섯 차례나 사용하면서 경제 주체 간의 균형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제2항 및 제4항).

현행헌법 전문에 명시된 핵심 가치이자 교육과 선거 조항 그리고 경제의 장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균등 개념은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제헌헌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현행헌법까지 ‘균등’이라는 문언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균등의 의미에 대한 정치철학, 법철학, 헌법사상적 접근이 미약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논문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탐구되거나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없는 균등 개념을 발견하고 그 쓰임새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형성하고 정립하였던 일제강점기는 일본제국주의 침탈로 국권을 잃고, 국민들이 정치적 유린과 경제적 수탈 및 교육적 탄압을 당했던 시기였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주의적 관습을 혁파해야 하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있었다. 조소앙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

를 개인·민족·국가의 세 가지 층위 및 정치·경제·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독립운동과 건국의 이념을 차별의 언어, 평등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형성·정립한 과정을 추적하고 대한민국 건국강령 및 제헌헌법에 반영된 삼균주의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상 ‘균등’ 개념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확인한다.

그러나 삼균주의는 해방 이후 역사적 격랑 속에서 남북 어느 곳에서도 지도이념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비록 현행 헌법 곳곳에 남아있는 ‘균등’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원래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담지한 채 유지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장에서는 삼균주의의 구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균등 개념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시도해보고, 조소앙이 특히 강조하였던 교육 균등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균등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삼균주의 균등 개념이 현시대 평등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요구를 상당 부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균등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날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이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현행 헌법에 화석처럼 굳어져 남아있는 ‘균등’이라는 문언에 온기를 불어넣어 되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현행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균등 개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탐구해본다.

평등을 향한 열망은 가장 불평등한 시대에 가장 강해지고, 정의에 대한 요구는 가장 부정의한 시대에 가장 크게 분출된다. 조소앙이 일생을 보낸 일제강점기는 개인과 민족, 국가의 모든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와 경제,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고 예속되어 자유롭게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불행한 시기였다. 그러한 부정의의 시대에 분출했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삼균주의라는 체계적인 이론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불평등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헌법상 균등 개념의 재발견이 시의적절한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균등, 조소양, 삼균주의, 실질적 평등
학 번 : 2017-22187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2장 균등 개념의 역사적 출현	9
제1절 사상적 배경	9
1. 조소앙의 생애와 저술	10
가. 조소앙의 생애	10
나. 조소앙의 저술	15
2. 시대적 배경	17
가. 현실적 기초	18
나. 역사적 기초	23
3. 이론적 배경	26
제2절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31
1. 삼균주의의 형성과 수용	31
2. 삼균주의의 내용 - 건국강령을 중심으로	40
가. 균등주의	40
나. 제도와 정책	43
3. 건국강령 수개논쟁	45
4. 해방정국에서의 삼균주의 실천운동	48
5. 제헌헌법에의 영향	50
제3절 소결	56
제3장 균등 개념의 의미	59
제1절 삼균주의와 균등	59

1. 삼균주의의 의의와 한계	59
2. 삼균주의의 구조와 균등 개념	60
3. 동일출발의 기회평등	62
4.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65
제2절 교육 균등의 의미	69
1. 교육 균등론의 의미	69
가. 교육과 신분	69
나. 교육과 역량	73
2. 교육 균등의 핵심과제로서의 여성교육	77
제3절 균등의 적용 모색	79
1. 평등의 시대정신과 균등	80
가. 인정적 평등의 부상	80
나. 적극적 평등의 요청	83
다. 균등의 현대적 의의	85
2. 현행헌법 해석에의 시사점	87
가. 균등의 적용가능성	87
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해석	89
제4절 소결	100
제4장 요약 및 결론	101
제1절 요약	101
제2절 결론	103
[별지1] 임시정부 및 해방기 헌법문서에서의 삼균주의	107
[별지2] 제헌헌법 이후 균등 문언의 변천	108
참고문헌	110
Abstract	11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헌법에 적합한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와 형성작업은 반드시 그 출발점을 헌법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헌법의 근본결정들, 그리고 중요한 원칙들, 헌법적 전통이 계승되거나 수정된 요소들 등 헌법에 적합한 헌법이론은 헌법 속에 명백히 표현된 주도적 질서이념(leitende Ordnungsidee)을 인식하고, 나아가 하나의 체계적인 지향점으로서 전개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헌법의 개별적 규정 속에서 명백히 제시되거나 개별적 규정을 근거지우는 것과 같은 헌법체계(Verfassungssystem)의 기본적 골격이 도출될 수 있다.¹⁾

우리 헌법은 ‘균등’(均等)이라는 단어를 모두 네 차례 사용하고 있다. 우선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여 균등을 거듭 강조한다. 균등은 자유, 민주, 평화, 국민과 함께 전문에서 두 번 이상 사용된 용어에 속하며,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을 명시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 역시 강조하고 있다(제116조 제1항). 또한 경제의 장에서는 비

1) 에른스트-볼프강 뢰켄히르데 지음, 김효전 편역, ‘헌법해석의 방법-재고와 비판’, 「독일 헌법학의 원천」, 산지니, 2018, 203면.

록 균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균형’이라는 단어를 무려 다섯 차례나 사용하면서 경제 주체 간의 균형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제2항 및 제4항).

균등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²⁾이다. 이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³⁾이라는 평등(平等)의 사전적 의미와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 용어로서는 물론 헌법 해석상으로도 두 개념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헌법 전문과 정치·경제·교육 분야에서 평등과 구별하여 균이 균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平)은 잔잔한 수면위에 든 물풀의 모양을 본 뜬 글자로서⁴⁾ 편안하고 무사하며 화목한 상태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반면 ‘균’(均)은, 땅을 가지런히 고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어원을 보면 땅을 갈다, 김매다와 같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⁵⁾ 따라서 균등 개념은 소극적인 차별의 시정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균등을 실현하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으로 발전할 씨앗을 내포한다. 물론 이러한 미약한 어감의 차이에서 균등 개념의 독자성을 발견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평등이 신분제적 질서를 배경하고 서구의 천부인권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개념인데 반해,⁶⁾⁷⁾ 균등 개념은 일제 강점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3)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4) ㈜오픈마인드인포테인먼트, 디지털 한자사전 e-hanja 참조. 다만 ‘평(平)’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중국 후한 시대 허신이 편찬한 자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악기 소리의 울림이 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5) ㈜오픈마인드인포테인먼트, 디지털 한자사전 e-hanja 참조.

6) 평등(平等)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선시대 실록에서도 드물게 발견되지만,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단지 ‘나란히’, ‘같은 등급으로’, ‘같은 정도로’ 등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어법으로 사용되었고, 근대적 평등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전종익, ‘정조시대 천주교 전래와 평등’, 법사학연구 제40호, 2009, 112-114면 참조.

7) 한국 사회에서 천부인권으로서 평등의 권리가 최초로 천명된 것은 갑신정변(1884) 당시

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된 독자적 헌법사상인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원한 것이다. 이처럼 개념의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균등과 평등 사이의 구별은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미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조소앙이 구축한 균등 개념과 현대의 비판적 정의론의 체계적·내용적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면, 현 시대의 모순과 부정의에 대처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균등 개념의 재발견과 재해석은 더욱더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현행헌법 전문에 명시된 핵심 가치이자 교육과 선거 조항 그리고 경제의 장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탐구되거나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없는, 균등 개념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적으로 균등 개념이 어떻게 출현했으며,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제정헌법 등 초기 헌법문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삼균주의의 구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균등 개념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시도해보고, 조소앙이 특히 강조하였던 교육 균등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균등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균등 개념과 실질적 평등의 요청이 마주치는 접점을 확인함으로써 헌법상 균등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날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작업에 따라 해석된 균등 개념을 사용하여 현행헌법상 균등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시사점을 모색한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균등’은 인정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오늘날 종래 형식적 평등을 중심으로 해석되어 온 헌법상 평등 개념

갑신 혁신 정강(甲申政令)에서다. 이 정강 제2조는 “문벌을 폐지하여 평등의 권리를 세울 것”(閉止門閥以制平等之權)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4, 76-80면 참조.

을 실질적 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 평등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과 별개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철학적 토대를 외국의 특정한 정치철학적 사조에서 구하거나,⁸⁾ 실정법상 근거로 현행헌법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논문이 균등 개념의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여 다시 소생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의 특정한 정치철학적 사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자생(自生)한 삼균주의라는 체계적 사상에서 실질적 평등의 철학적 토대를 구하고, 나아가 현행헌법 전문, 정치, 경제, 교육 영역에 산재해 있는 ‘균등’과 ‘균형’이라는 문언을 통합적·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실질적 평등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75년 홍선휘의 ‘조소양사상’⁹⁾이 발표되면서 삼균주의가 주목받은 이래, 그동안 삼균주의에 대해서는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⁰⁾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삼균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까지 전개되었던 정치현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삼균주의를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테면 조소양이 어떠한 시대적, 지적 배경 아래 자신의 사상을 형성했는지를 추적하는 연구¹¹⁾나 동시대 정치현실과의 상관성 속에서 삼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8) 예를 들어 실질적 평등의 정치철학적 토대를 ‘공화주의’에서 구하는 문헌으로,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28면 이하 참조.

9) 홍선휘, 「조소양사상: 삼균주의의 정립과 이론체계」, 태극출판사, 1975.

10)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시스템(RISS)에서 “삼균주의”라는 검색어로 관련 국내학술논문이 약 120개, 학위논문이 25개가 검색되며, “조소양”이라는 검색어로도 그에 준하는 숫자가 검색된다.

11) 이상익, ‘조소양 삼균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이념적 성격’, 한국철학논집 제30집, 2010, 87-121면; 샷사 미츠아키, ‘조소양의 대동사상과 아나키즘-‘육성교(六聖教)’의 구상과 ‘한살임(韓薩任)’의 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제40집, 2016, 221-246면 등.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¹²⁾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법학 분야에서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삼균주의가 폭넓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학의 기존 연구들 역시 위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제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제헌헌법의 성립과정에서 삼균주의가 미친 영향을 추적한 연구¹³⁾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삼균주의의 내용, 그 중에서도 핵심 개념인 ‘균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특별한 분석 없이 그저 조소앙이 서술한 내용을 그대로 재서술하는 데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이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1990년경 최초로 균등 개념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이 시도되었으나¹⁴⁾ 다른 학자들의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못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정치학계에서 의미 있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¹⁵⁾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제헌헌법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현행헌법까지 ‘균등’이라는 문언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균등의 의미에 대한 정치철학, 법철학, 헌법사상적 접근이 미약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느 사상에 대한 평가는 그 사상의 모태가 된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사상을 하나의 순수한 지식체계로 상정하고 그 지식체계를 구성하고 있

12) 배경한, ‘삼균주의와 삼민주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제15권, 중국근현대사학회, 2002, 1-16면; 서희경·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30집 제1호, 2007, 77-111면 등.

13) 신우철,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63-97면; 황승흠,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011, 549-589면; 신우철, ‘임시정부기 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43-68면 등.

14) 윤홍근, ‘소양사상에 있어서 균등개념의 연구’, 삼균학회 편역 「삼균주의론선(三均主義論選)」, 삼성출판사, 1990, 139-164면.

15) 강정인·권도혁,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균등’개념의 분석 및 균등과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집 1호, 2018, 257-276면.

는 개념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¹⁶⁾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전자에 치우쳐 이루어져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전자의 방법론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는 경우 특정인물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파적 활동에 주목하여 사상과 개념의 온전한 의미를 왜곡하거나 협소하게 이해할 위험이 있다. 반면 후자의 방법론에만 따른다면 당대의 맥락과 원래 의도가 거세된 채 현재의 필요에 따라 개념을 자의적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핵심개념이자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명시된 개념인 ‘균등’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위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다. 즉 삼균주의 사상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이것이 헌법의 규범체계로 수용된 현실적 과정을 면밀히 탐색하는 한편, 삼균주의의 구조와 내용으로부터 통일적인 균등 개념을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삼균주의의 역사적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헌법전에 살아있는 ‘균등’이라는 문언을 시대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실마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헌법상 균등 개념이 어떤 배경 하에서 등장하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본다. 우선 균등 개념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삼균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확인한 후, 삼균주의의 형성·정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되도록 조소앙이 직접 저술한 수많은 헌법문서와 문헌의 원문을 직접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으로 수용되어 제헌헌법에 반영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조소앙이 말하고자 하였던 ‘균등’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한다. 개인 간의 균등을 중심으로 균등 개념을 이해

16) 윤흥근, 앞의 논문, 144면.

하였던 기존의 해석 틀을 벗어나 삼균주의의 전체 구조를 중심으로 균등의 의미를 유기적·통일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삼균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 균등의 의미와 조소앙이 여성 교육을 강조한 이유를 균등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본다. 그 다음 균등론이 현대의 실질적 평등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행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균등 개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탐구해본다. 여기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할 것이다.

조소앙의 정치사상이나 국가론, 나아가 독립운동방략이나 건국구상을 모두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조소앙의 핵심적인 헌법사상인 삼균주의에서 균등의 의미를 탐구하고, 현대의 실질적 평등의 요청에 부응하여 균등 개념을 체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헌법의 균등 개념을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균등의 의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소앙의 사상적 궤적을 다루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루는 균등 개념은 기존의 평등 개념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었거나 본격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실질적 평등의 전거를 마련하고, 특히 평등의 인정적 차원(the recognition dimension of equality)¹⁷⁾을 균등 개념을 통해 도입하고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굳이 따지자면 평등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거나 특정 영역에서 평등의 적용 강도를 강화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특히 현행헌법상 균등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기존의 형식적 평등이나 분배적 평등에 관한 이론이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려두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헌법상 균등 개념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고 평등과

17) 이에 관해서는 제3장 제3절 1.항목에서 다시 설명한다. 우선 Sandra Fredman, 「Discrimination Law」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8-30면 참조.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균등에 관한 착상이 받아들여진다면, 평등과 균등 사이의 구별과 경합에 관한 문제를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다루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악셀 호네트(Axel Honneth)는 그의 저서인 ‘인정투쟁’(1992)에서, 초기 헤겔의 사유 모델로부터 ‘인정투쟁’ 개념을 발굴하여(제1부), 미드의 사회심리학을 통해 이를 현대적인 사회이론으로 재정립하고(제2부), 재정립된 ‘인정투쟁’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철학적 조망을 하고 있다(제3부). 이 글이 조소앙의 ‘균등’ 개념을 발굴하여 현대의 인정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의 요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미를 재구성한 후 현행헌법에 의 시사점을 탐색한 것은 ‘인정투쟁’의 논증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밝힌다.¹⁸⁾

18) 악셀 호네트 지음,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참조.

제2장 균등 개념의 역사적 출현

제1절 사상적 배경

우리는 오천년 독립자주하여 오던 국가를 이족 일본에게 빼앗기고 지금 정치의 유린과 경제의 파멸과 문화의 말살 앞에서 사멸에 직면하여, 민족적으로 자존을 득하기 불능하고, 세계적으로 공영을 도하기 미유(未有)¹⁹⁾한지라. 이에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 일본의 모든 침탈세력을 박멸하여, 국토와 주권을 완전 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을 건설하여서, 안으로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하며, 밖으로는 족여족(族與族), 국여국(國與國)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 일가의 진로를 향함.

한국독립당 당의(1930. 1. 25.)²⁰⁾

조소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필요에 따라 ‘임정’이라 한다)의 지도이념인 ‘삼균주의’를 창안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 상해에서 임정을 창설한 주역이자 임정의 집권정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의 중심인물로서, 광복 후의 국가건설 계획인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초안한 임정의 대표적 이론가였다.

조소앙에 관해서는 삼균주의가 어떠한 사상적 배경 아래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유독 많다.²¹⁾ 이는 조소앙이 당대에 존재하는 거의 모

19) 많은 문헌들이 ‘말유(末有)’로 쓰고 있으나, 문맥상 공영을 도모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미유(未有)’의 오기로 보아 미유로 정리하였다. ‘말유(末有)’로 쓰고 있는 문헌으로는,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337면; 조범래, ‘한국독립당연구(1930-1945)’,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70면 등이 있고, ‘미유(未有)’로 쓰고 있는 문헌으로는 김삼웅, 「조소앙 평전」, 채륜, 2017, 82면이 있다.

20)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당의’,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337면.

21) 이상익, 앞의 논문, 87-121면; 배경한, ‘삼균주의와 삼민주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제15권, 중국근현대사학회, 2002, 1-16면; 샷사 미츠아키, 앞의 논문, 221-246면 등 다수.

든 사상의 세례를 받고 이를 실천하면서 삶의 궤적을 그려왔으며, 삼균주의가 가지는 독특한 내용이 어느 하나의 전통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삼균주의에서 균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우선 조소앙의 생애를 추적하고, 삼균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조소앙의 생애와 저술

가. 조소앙의 생애²²⁾

(1) 출생부터 일본 유학까지

조소앙은 1887. 4. 8. 경기도 교하군(현 파주군) 월충면에서 부친 조정규와 모친 박필양 사이에서 6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용은(鏞殷), 자는 경중(敬仲)이었는데, 동경 유학 시절 소양(蘇仰)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고, 1923년 ‘소양집(素昂集)’이 출간된 이후에는 스스로를 소양(素昂)이라고 표기하였다.²³⁾

조소앙은 1892년 5세부터 조부 조성룡에게 한문을 수학하였으나 개화와 독립운동가였던 말형 조용하의 영향으로 개화와 서양지식에 일찍 눈을 뜨게 되었다. 15세 되던 1902년에 성균관에 입학하였는데, 일본이 마산항 일부를 조계지로 삼자 신채호 등과 항일성토편을 만들어 이하영 등의 매국음모를 규탄하였다.

22) 조소앙은 전기가 출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삼균주의에 관한 논문 대부분이 조소앙의 생애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조소앙의 생애에 대한 이 글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다음 단행본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이 글에 인용된 삼균주의 관련 논문들과 비교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김삼웅, 「조소앙 평전」, 채륜, 2017; 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부코, 2014.

23) 조소앙이 일본 유학 시기에 기독교를 수용하면서부터 사용한 ‘蘇仰’은 예수를 섬기면서 살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으나, 1920년대 이후에는 희고 밝다는 일반적 의미를 갖는 ‘素昂’으로 호를 바꾸었다. 이는 예수라는 특정 종교나 인물에 대한 숭배 관념을 벗어나 자신의 미래 의지를 보편화하겠다는 의식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다.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11면 참조.

조소앙은 1904년에 성균관을 수료하고 그 해 7월에 황실유학생에 선발되어 동경부립제일중학교(東京府立第一中學校)에 입학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외국어와 법률을 배우는 외에도 대한제국 주독 공사관의 참사관으로 있는 만형 조용하가 베를린에서 보내준 『손문전(孫文傳)』과 고리키의 작품을 비롯하여 강유위(康有爲)·양계초(梁啓超)·다윈 등 동서양에 걸친 저명인사의 정치·철학·역사·종교 등에 관한 책을 탐독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동경 유학생들과 함께 우에노공원에서 7층신 추도대회를 열고 일진회의 매국행각을 규탄하였다. 1907년 미국에서 귀국차 동경에 기착한 안창호를 만나 시국문제를 토론하고 국내의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이듬해 메이지(明治)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다.

그는 1909년에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의 각 단체를 통합한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를 창립하고 회보를 창간하여 주필로 활동하였다. 당시 유학생으로 와있었고 훗날 중국의 혁명가이자 국민당의 우파 이론가가 되는 대계도(戴季陶, 1891-1949) 등과 교류하면서 한·중 두 나라가 가진 공동의 문제에 관하여 논하기도 하였다. 1910년에 한국이 일제에 강제 병탄되자 비상대회의 비밀소집을 도모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구금당하였다. 또한 1911년 중국으로의 망명을 계획하였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었다.

조소앙의 8년 일본 유학은 망국과 국치의 기간이었고, 법학을 공부하면서 적잖게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절의 법학 공부는 훗날 그가 임정의 헌법문서를 기초하는 토대가 되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대학 법학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훈련을 한 셈이었고, 삼균주의 이념의 체계화 작업은 이러한 논리적 훈련으로 가능했던 것이었다.²⁴⁾

(2) 상해 망명과 임시정부 활동

조소앙은 1912년 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경신학교·양정의숙·대동법률

24)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지영사, 2003, 51면.

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중국 상해의 신규식과 연락을 취하고 망명계획을 추진하여, 1913년 북경을 거쳐 상해로 망명하였다.

망명 직후 신규식·박은식·홍명희 등과 동제사(同濟社)를 박달학원(博達學院)으로 개편하여 청년 혁명가들을 육성하고, 중국혁명이 대계도를 비롯하여 진과부(陳果夫)·황각(黃覺) 등과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 반일대동당(反日大同黨)을 결성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소앙은 1914년 국내외 동포의 대동단결과 민족의 종교적 단결을 목적으로 ‘육성교(六聖教)’라는 구국종교를 구상하였다.

1917년 상해에서 민족대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의 ‘대동단결선언’을 기초하여 신규식·박은식·신채호 등 14명의 명의로 발표하고 각계인사에게 발송하였다. 조소앙은 1918년 중국 동북지방 길림에 가서 김좌진 등과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그 부주석에 선임되었다. 이듬해 2월에는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김교헌·박찬익·이동녕·안창호·이시영·신규식 등을 비롯한 저명한 민족독립운동자 39명의 명의로 발표하였다(일명 무오독립선언).²⁵⁾

조소앙은 1919년 4월 상해에서 임정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임정 ‘임시헌장’과 ‘임시의정원법’의 기초위원으로 실무작업을 담당하였다. 제1회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개최되어 초대 국무총리에 이승만이 선출되고 국무원이 구성되자, 조소앙은 국무원 비서장에 선임되었다가 다시 국무위원에 피선되었다.

그 해 4월 상해 임정에서는 국내의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 및 송금, 임정의 선전과 독립사상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조직하였다. 이때 조소앙은 외교특파원으로 임명되어 각지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만국평화회의의 대표단 지원과 국제사회당대회(제2

25) 조소앙이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시기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조소앙 스스로가 1919. 2.경 작성하였다고 밝혀 3. 1. 서울에서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흔히 ‘무오독립선언서’라고 알려져 있으나, 3·1운동 이후인 1919. 3. 3.경 작성되어 이후 배포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한 문헌으로, 김삼웅, 「조소앙 평전」, 채륜, 2017, 59-61면 참조.

인터내셔널)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을 경유 파리에 도착하여, 임정의 전권대사로 파견된 김규식과 합류한 뒤 한국의 독립 승인 및 국제연맹에의 가맹을 요구하는 등의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8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사회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독립의 승인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36개 참가국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그 대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시 ‘한국독립문제실행요구안’을 제출하여 10개 참가국가들은 이를 통과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미국에서 이살음(李薩音)·김호(金乎) 등이 노동사회개진당을 조직하고 당대회에서 조소앙을 세계인민연맹 결성대회에 한국대표로 선출하여 경비를 제공하였다. 조소앙은 이듬해 봄 파리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을 만나 ‘시간의 머리와 공간의 꼬리’에 대한 문답을 교환하고, 런던에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회동하여 세계문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 영국 노동당 지도자 맥도날드 등과 회합하여 영국 하원에 한국문제에 관한 4개조의 토의 안건을 제출케 하였으며, 유럽 외교의 성과로 에스토니아 국회에 정식으로 한국독립승인안이 상정되었다. 유럽 순방에 이어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소련혁명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약 3개월 간 8개국 대표 25인 사찰단의 일원으로 러시아 각지를 시찰하기도 했다.

상해로 귀환한 조소앙은 ‘발해경(1922)’ 등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저서를 집필하는 한편, 정세분석을 통해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1930)’, ‘한국독립당의 근황(1931)’, 임정의 외교문서, 독립신문의 논설, 각종 선언문 등 활발한 문필활동을 하였다.

1920년대 중국 국공합작의 영향을 받은 민족유일당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1930년에 조소앙, 이동녕, 안창호,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해외독립운동전선을 통일하기 위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여기서 조소앙은 삼균주의에 입각하여 한국독립당의 당의와 당강을 작성하였고, 곧이어 삼균주의는 1930

년대 이후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진영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마침내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 삼균주의의 정수이자 이후의 독립운동과 헌법제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한다.

(3) 해방 이후

조소앙은 광복 이후 4개월만인 1945년 12월 1일, 한국을 떠난 지 32년 만에 임정 대변인 겸 한국독립당 부위원장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임정이 미군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반탁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조소앙은 비상국민회의에서 김구와 함께 임정의 정통성 고수를 주장하고, 신탁통치를 전제로 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참가를 반대하는 등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 2월 유엔에 의해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되자, 조소앙은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여 3월 총선거에 불참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곧이어 남북협상안 7개 항목을 발표하고 남북에 의한 자주적 해결을 위해 김구·김규식 등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남북협상이 뚜렷한 결론을 보지 못하면서 그는 5월에 돌아오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권과 영토가 완성되지 못했다고 대한민국을 거부하면 안 된다”며 정부수립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조소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단독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정부를 향한 과도단계라고 생각했으며, 그가 구상한 삼균주의 정책을 대한민국의 회정치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통일정부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²⁶⁾

1948년 10월에는 한국독립당과 결별하여 12월에 독자적으로 삼균주의 노선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사회당을 결성하고 그 위원장에 선임된다.

26) 김기승,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8집 제1호, 2009, 36-37면 참조.

이 사회당의 기본노선은 결당대회 선언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산계급 독재도 자본주의 특권계급의 사이비적 민주주의 정치도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정된 균등사회의 완전 실현만을 갈구”²⁷⁾하는 것인바, 우선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삼균주의 이념을 실천하려는데 있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총선거에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하여 전국 최고득표로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하지만, 곧 6·25전쟁이 발발하여 납북되고, 1958년 9월 10일 북한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나. 조소앙의 저술²⁸⁾

조소앙은 평생 많은 글을 쓰고 남겼다. 그는 한문,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능통하여 임정 외교 및 대외 입장 발표 등 문필을 도맡았다. 대한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때부터 대일 선전 포고와 건국강령 선포까지 그의 손을 거쳐 간 역사적 문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본 유학 시절 ‘공수학회보’, ‘대한흥학보’ 편집을 맡는 한편 한국 신문에 논설을 기고하며 시작된 저술가로서의 이력은 상해 활동 시기의 ‘독립신문’ 및 ‘평론’, 국문판 ‘한보(韓報)’와 중문판 ‘한보특간(韓報特刊)(1930)’의 발행, 항주(杭州) 활동 시기의 ‘진광(震光)’ 국문판·한문판(1934), ‘광복(光復)’(1941)의 창간으로 이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역대 한국의 문장을 가려 뽑은 ‘한국문원(韓國文苑)’(1932)을 중국에서 출판한 바 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열전인 ‘유방집’(1933)과 개인 문집 ‘소앙집’(1932) 역시 중문으로 출간하였다. 그 밖에도 ‘상해주보’ 특간에 한중 동맹론을 제창하는 글을 기고(1925. 5.) 하는 등 일본과 서구의 침략에 맞서 한중 동맹과 동아시아 연대를 주장

27)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사회당 결당대회 선언서’(1948. 12. 1.), 「소앙선생문집 下」, 햇불사, 1979, 115면.

28) 이하에서 인용하는 조소앙의 저술은, 가급적 「소앙선생문집」에 수록된 글을 기준으로 하였다. 순한문 저술의 경우 번역문의 페이지를 병기하였고(예컨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소앙집」 등), 국한문 혼용체 저술의 경우 한글 고어 표현은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었다.

하는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²⁹⁾

그의 저술은 1979년 삼균학회가 발행한 ‘소양선생문집’ 상·하권에 수록되었으나, 신문·잡지 등에 기고한 논설 등은 미처 다 찾지는 못했던 것 같다. 조소앙의 주요 저술을 삼균주의 사상의 형성기(1920년대 중반 이전), 정립기(1930년 전후), 실천기(1940년대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⁰⁾

우선 1920년대 중반 이전의 삼균주의의 형성기에 작성된 저술로는, 국권침탈에 대항하여 강력한 독립의지를 평등주의적 가치를 통해 드러낸 ‘대한독립선언서(1919. 2.)’,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문서로서 삼균주의의 원형이 엿보이는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³¹⁾ 뚜렷한 민족사적 기초와 풍부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삼균주의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발해경(渤海經)(1922)’과 ‘김상옥전(1925)’³²⁾ 등이 주목할 만하다.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삼균주의는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 내용이 정립된다. 이 시기의 중요한 문헌으로는 삼균주의의 토대가 되는 시대인식과 역사인식을 정밀하게 드러낸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韓國之現狀及其革命趨勢)’(1930. 4.), 삼균주의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한 한국독립당의 당의와 당강(1930. 1.) 및 이를 부연·설명한 ‘한국독립당의 근황(韓國獨立黨之近狀)’(1931. 1.)³³⁾ 등이 있다.

삼균주의가 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대성된 것은

29) 조소앙 지음, 이정원 옮김, 「유방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18-20면 참조.

30) 조소앙의 저술 목록은, 김삼웅, 「조소앙 평전」, 채륜, 2017, 347-349면을 주로 참고하였다.

31) 임시헌장 작성에 관해서는,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법사학연구 제29호, 2004, 12면;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2009, 170-174면 참조.

32) ‘김상옥전’은 순한문으로 쓴 25쪽의 작은 책자로, ‘서문’, ‘열사 김상옥전’, ‘발해경’, ‘한살림요령’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인 황제민(黃介民, 黃覺)의 서문이 수록되었다.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소양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443-448면.

33) 한국독립당 기관지인 ‘진광’(震光)에 발표되었다.

‘대한민국건국강령’(1941. 11. 28.)에 이르러서다.³⁴⁾ 해방 이후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삼균주의 실천기의 문서로는 ‘삼균주의청년동맹 결성 취지서’(1946)와 ‘삼균주의청년동맹 선언’(1946) 및 ‘삼균주의학생동맹 선언’(1948) 등이 있다.

그밖에도 조소앙은 일본제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자주국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복원된 국가를 재건하는 전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헌을 남겼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삼균주의에서 균등 개념이 어떻게 출현하여 형성·전개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헌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헌은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한국독립당의 근황’, ‘대한민국건국강령’이 될 것이다.

2. 시대적 배경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형성하고 정립하였던 일제강점기는 일본제국주의 침탈로 국권을 잃고, 국민들이 정치적 유린과 경제적 수탈 및 교육적 탄압을 당했으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주의적 관습을 혁파해야 하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있었다. 조소앙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세 가지 층위 및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독립운동과 건국의 이념을 차별의 언어, 평등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삼균주의의 ‘균등’ 개념이 당대의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상 일제강점기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일제강점기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상세히 탐구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오히려 삼균주의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소앙이 당대의

34) 건국강령 작성에 관해서는, 신우철,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63면 이하 참조.

현실적·역사적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삼균주의 형성기의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소앙의 시대인식과 역사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소앙은 통계자료와 기사를 자주 인용하여 사회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하기를 즐겨했고,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전략가로서 활동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는 삼균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대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삼균주의를 도출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을 과감하게 해석하거나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가공하기도 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둔다.

가. 현실적 기초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소앙의 시대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은 1925년경의 국내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한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라는 글이다. 이 글 가운데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부분은, 일본 통치 하에서 정치적으로 유린당하고, 교육적으로 압박당하고, 경제적으로 과멸당한 식민지 조선의 실정을 방대한 통계와 증언을 동원하여 파헤치고 있다. 그 밖에 1935년경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임정 명의로 발표한 ‘제23주년 3·1절 선언’(1942. 3. 1.) 중 ‘2. 국내정세의 일반’ 부분도 경제와 교육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차별을 적시하고 있다.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의 제1장부터 제3장까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³⁵⁾

제1장 다른 민족 전제 아래의 정치적 유린

1. 체포만 일삼는 일본의 정치
2. 혁명사상에 대한 단속망

35)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39-59면.

3. 한국인을 탄압하는 군대와 경찰기관
4. 죄수의 급격한 증가와 감옥의 확장
5. 언론·집회·결사·출판에 대한 탄압의 일반적 상황

제2장 다른 민족 전제 아래의 교육적 탄압

1. 교육계의 모순성
2. 가혹한 입학 제한
 - ① 학교 수와 학령 아동 수의 불일치
 - ② 재산에 따른 제한
 - ③ 사상, 신분에 따른 제한과 가혹한 시험
3. 학생의 저항(파업운동)
4. 졸업생의 진로는 어떠한가
5. 최근 학생의 혁명운동과 일본의 탄압에 의한 참상

제3장 다른 민족 전제 아래의 경제적 파멸

1. 한국 부력(富力)의 개황
 - ① 농업생산 ② 수산업 ③ 광업생산 ④ 공업 ⑤ 상업 ⑥ 철도
 - ⑦ 목재 ⑧ 은행 ⑨ 무역
2. 한국의 인구문제
3. 토지 겸병의 위기
4. 지주의 몰락과 농노의 급격한 증가
5. 한국인의 몰락상황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는 한국의 정치, 교육, 경제가 일본의 탄압과 유린 아래 파멸되는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상세히 인용되는 통계 수치³⁶⁾와 구체적인 상황 묘사는 식민지배 아래 한국의 모습

36)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제1장에서만 ① 감옥 죄수 통계 비교(1929년 11월 말 조사), ② 1929년 11개월간 검거 통계, ③ 경성 내 5개 경찰서의 11개월간 검거 통계, ④ 1929년 1년간 경성 집회 통계, ⑤ 1929년 1년간 경성 강연회 통계가 인용되었다. 제2장에서는 ① 한국 내 보통학교 교사 중 한국인과 일본인 인원수 비교, ② 한국 내 중등학교 교직원 중 한국인과 일본인 인원수 비교, ③ 한국 내 전문학교 교사 중 한국인과 일본인 및 기타 인원수 비교, ④ 입학 인원의 비교, ⑤ 경성대학 및 법대, 의대,

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었다. 당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자행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의 일반적 상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 총맹³⁷⁾ 외에 신간회도 합법적 결사인데 창립한 지 4, 5년 이래 한 차례도 집회 개최가 허락되지 않았고, 소학생의 전국 단체인 소년동맹도 집회 개최가 허락되지 않았다. 심지어 환영하거나 전별하는 친목 집회도 금지되었다.

출판 쪽을 말하자면, 매달 400여 건 압수하는 일을 예사로 여긴다. 월간 잡지는 하나라도 거스르면 반드시 무기한 간행을 금지당하거나 처벌 받았다. 그래서 국내 출판업은 적막하여 말할 게 없다. 외국에서 들어온 서적과 신문도 반드시 금지하였다. ...이렇듯 고압적인 정치 아래에서 극소수의 앞잡이를 제외하고는 거세게 일어나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로써 민족의식을 깨우친 정도가 더욱 깊어졌다.³⁸⁾

또한 조선의 비참한 경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국인의 몰락상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한 탄압에 쫓겨서 대의를 품고 헤어지거나 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재앙이 만연하였다. 1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2000여 명이고, 세금을 거두는 관리에게 강제로 집행당한 일이 1년에 30만 건이다. ...서울에서 20원이 채 못 되는 월급으로 7명의 의식(衣食)을 감당하는 가난한 집은 총인구의 40%보다 많다.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구차히 목숨을 이어가는 농가는 5개 도 내에 모두 25만 호로 약 25만 명 안팎이다. ...몰락한 중산계급은 10년 동안 모두 50만 명이다. 만주

공대, 상대, 농대 6개 학교 입학 인원의 비교, ⑥ 상급학교에 입학한 학생 비율이 인용되었고, 제3장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통계가 인용되었다.

37) 노총(勞總 노동동맹), 농총(農總 농민동맹), 청총(靑總 청년동맹)을 말한다.

38)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소양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42-43면(조소앙,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양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48-49면).

로 이주한 사람은 10년 동안 모두 30여만 명이다. ...1년 동안 힘들고 고생스럽게 경작하여 얻은 쌀 1700만 섬은 과반이 일본인의 식량이 되고, 겨우 반인 800만 섬을 국내에서 소비하는데 이것도 중산 계급 이상의 사람과 다른 민족의 식량이 된다. 일반 농민은 좁쌀이 일상 식량이기 때문에 비교적 싼값인 만주 조(粟)의 1년 수입량이 대략 300만 섬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추위와 배고픔에 쫓겨 학교를 그만둔 사람은 1년이 모두 7만여 명이다.³⁹⁾

삼균주의의 내용 가운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토지국유론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소앙의 토지국유론은 우리 민족사에서 발견되는 봉건적 적폐인 토지의 사유·점병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 비판에 기초한 것이었다. 나아가 조소앙은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경제정책을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분석한 후 일본인 지주의 증가와 한국인 지주의 몰락, 소작농의 증가 경향을 비판하면서 당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토지사유제를 배척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경술년의 국치를 당한 이래로 5천년을 두고 스스로 경작하던 토지를 모두 일본인에게 잠식당하거나 통제로 삼켜지고 말아, 마침내는 온 나라의 겨레가 남김없이 농노가 되었은 즉, 이른바 민족문제라 함은 곧 농민의 문제요, 농민의 문제란 바로 농노문제에 불과하게 되었다. 중국의 소작농 제도가 비록 소농에게 있어 불리한 바가 많기는 하나 토지의 균분에 대개 그 공평을 얻었으므로, 한국에 비하면 마치 하늘과 땅 차이로, 한국인이 토지혁명을 제창함은 남이 쓰다가 버린 것을 주워서 그대로 해보는 ‘모더니즘’ 운동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 속박당하는 스스로의 입장에서 토지사유의 나쁜 제도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때문에서였다.⁴⁰⁾

39)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58-59면(조소앙,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앙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95-96면).

40)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57면(조소앙,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앙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92면.).

임정의 ‘제23주년 3.1절 선언’에서도 1930년부터 1935년 사이의 통계 자료로 더욱 가혹해진 일본의 경제침략을 분석·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한국토지의 35%는 동양척식공사의 소유로 되었고, 15%는 흥업은행의 소유가 되었으며, 심지어 한국인 농가의 67%가 이미 농노가 되었고 해마다 일본 국내를 떠돌아다니는 자가 2만여 명에, 해마다 귀국하는 자가 1,534명인데, 그 중 10원 미만을 소유한자가 1,268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한국 안의 가장 큰 지주는 바로 일본인이요, 가장 큰 자본가 또한 일본인으로, 한국인은 이미 그들의 농노요 공노로 변하고 말았다.⁴¹⁾

일본인이 토지를 독점하고 한국인이 농노 지위로 전락한 상황에서 토지사유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봉건사회에서 균등사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조소앙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삼균주의의 토지국유론은 균등을 실천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핵심전략이자 각 개인이 자유와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삼균주의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철저한 국비교육과 의무교육을 통한 교육균등을 주장한 것이다. 조소앙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제도가 대중교육을 담당할 수 없었으며, 교육의 내용도 서구의 과학문명을 수용하지 못했기에 국가를 수호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제하에서는 일본인 본위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한인에 대한 교육이 극히 제한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균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1)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제23주년 3.1절 선언’, 「소앙선생문집 上」, 혜불사, 1979, 289면(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권 임정편 II, 90면).

그는 ‘한국혁명과 그 혁명추세’에서 통계자료를 통해 일본인의 교사직 독점, 한국인 교사에 대한 차별, 한국인 입학 시 재산·사상·신분적 제한, 졸업생의 취직제한, 국내 학생의 저항운동 등을 설명한 다음, 이러한 교육상의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학생해방운동을 지지하였다. 결국 그가 철저한 국비교육론과 균등교육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빈부, 신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일본의 문화말살정책으로서의 교육정책에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⁴²⁾

한국어와 한국사를 배우고자 하여도 일본인이 이를 금지하고 일본어와 일본사를 이에 대체하며, 한인 교사와 한국 서적은 한인들이 요구하는 바로되 일본인들이 이를 또한 금지하여 일인 교사, 일본 서적으로 대치하였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한국인들은 균등하게 향유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인들이 이를 제한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살아있으면서도 학습할 학교가 없고, 배웠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직장이 없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뼈에 사무친 한이다.⁴³⁾

마지막으로 삼균주의는 민족 간의 평등과 국가 간의 평등, 나아가 세계일가를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특세한 제국주의에 맞서 약소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추구하고, 각 국가가 보유한 주권을 보장함으로써 국제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삼균주의는 일본이 조선에 행하는 ‘정치의 유린, 경제의 파멸, 문화의 말살’의 극복과 새로운 평등한 민족국가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대적 배경에서 구성된 이론체계라 할 수 있다.

나. 역사적 기초

42) 일제강점기에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교육기회,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의 심각한 차별에 관해서는 아래 제3장 제2절 1.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43) 조소양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소양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43면(조소양,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양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53면).

조소앙이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선명한 ‘대비’(對比)다. 역사적 사건이나 제도 가운데 균등을 지향하였던 전통을 발굴함으로써 삼균주의의 역사적 근거를 정초(定礎)하는 한편, 신분에 따른 차별이나 토지의 독점 등 불평등한 봉건적 제도를 비판하면서 민족혁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의 양면을 대조적으로 부각시켰다.

조소앙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은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제4장과 제5장이다. 조소앙은 아래와 같이 정치·경제·교육의 차별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역사를 분석하고 있다.⁴⁴⁾

제4장 한국혁명의 역사적 기초

1. 인민 기본 권리의 불평등
 - ① 계급제도
 - ② 노예제도
2. 인민 생활 권리의 불평등
3. 인민의 배울 권리의 불평등
4. 망국조약의 연혁

제5장 한국혁명운동의 체계

1. 총서
2. 제5차 혁명이래 각 방면의 활동개황

조소앙은 위 글에서 평등이 실현되지 못했던 우리 역사를 준엄하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승할 만한 의의가 있는 과거의 제도나 선현의 입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신라의 왕위계승 제도나 화백제도, 만적의 난, 고려 초기나 조선 초기의 토지국유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정도전의 토지개혁론과 유성원의 신분제개혁론을 재조명하였다.

44)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소앙선생문집 上」, 햇빛사, 1979, 59-76면 참조.

또한 신지비사(神誌秘詞)⁴⁵⁾에서 말하는 균등이 맥락상 한반도 각지의 지덕(地德)을 고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나아가 조소앙은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서 논거를 찾을 수 없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발해경’을 저술하여 직접 창작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⁴⁶⁾

이처럼 조소앙은 우리 민족의 전통에 입각하여 삼균주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사상 가운데 삼균주의와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원형과 달리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없는 내용을 전통에 가탁하여 창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균등’은 우리 역사와 전통에서 면면히 계승된 전통이라기보다는 조소앙이 발굴하여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며, 삼균주의는 하나의 역사론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마저 있다.

조소앙이 비록 균등 개념의 역사적 당위성이나 타당성의 근거를 우리 역사, 나아가 고대 사상이나 동양철학에서 구하고 있으나, 역사적 과정을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바라보는 삼균주의 역사인식의 기초는 마르크스적 역사관으로부터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⁴⁷⁾ 조소앙은 ‘삼균주의학생동맹선언’(1948. 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종래 사회의 역사는 유식과 무식, 유력과 무력, 유산과 무산의 투쟁의 역사이다. 즉 유식자는 무식자를 무시⁴⁸⁾하고, 유력자는 무력자를 억압하고, 유산자는 무산자를 착취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인민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무식과 무력, 무산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투쟁하고 있다.

45) 현재 전하지 않는 풍수도참서(風水圖讖書). 조선 시대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고려 숙종 때 김위제가 이 책을 인용하여 남경 천도를 주장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참조.

46) 이상익, 앞의 논문, 110-111면 참조.

47) 윤홍근, 앞의 논문, 146면 참조.

48)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무시’는 교육 균등론을 현대의 인정이론과 매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

이에 일층 발전하여 전인민은 교육상의 재력과 정치상의 권력과 경제상의 부력의 균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을 개시하고 있다. 즉 삼균주의 사회로 지향 발전하고 있다. 삼균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발전에 의하여 우리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다.”⁴⁹⁾

다음 항목에서는 조소앙이 이러한 시대인식과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이론적 무장을 갖추어 삼균주의를 형성해나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이론적 배경

조소앙은 흔히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민족주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사상적 편력은 실로 오래고 깊으며 다양하다. 유학이나 단군신앙과 같은 동양적 전통에서부터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서구의 이념, 나아가 삼민주의 또는 대동사상과 같은 중국의 근대적 사상까지 모두 삼균주의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그는 어린 시절 전통적인 한학 교육을 받았던 덕분에 1910년 이전에는 유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삼균주의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⁵⁰⁾

또한 조소앙은 1910년경부터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전덕기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1914년에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성인 6명⁵¹⁾을 뽑아서 그 가르침을 통합하여 육성교(六聖教)⁵²⁾라는 종교를 독자적으로

49)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삼균주의학생동맹선언’, 「소앙선생문집 下」, 햇불사, 1979, 156-158면.

50) 이상익, 앞의 논문, 93-98면 참조.

51) ‘육성(六聖)’이란 단군, 석가모니, 공자, 예수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마호메트를 지칭한다.

52) 조소앙 스스로 ‘육성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일신교(一神教)’와 대동종교(大同宗教)’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김기승은 조소앙 문집 연보에 있는 “1915년 29세, 국내외 동포의 대동단결을 정신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종교통일의 「육성교」를 제창”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그의 종교적 탐색과 구상을 육성교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한다.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지영사, 2003, 122면.

구상하였다. 그가 일정한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종교를 창제하는 것은 당대 식민지국가에서 낯선 현상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구한말 구국지사들 상당수는 민족 구국종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매진하였고, 기성종교와 외래종교를 혼합한 신종교 창립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조소앙이 1919년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을 기초하였을 때 함께한 서명자 39인 대부분이 대종교도였고, 선언문에도 대종교 경전의 내용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⁵³⁾ 그가 1922년 ‘발해경’이라는 경전 형식을 빌어 독립의식을 고무하려 했던 것도 대종교 단군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해준다.⁵⁴⁾ 조소앙이 가졌던 이러한 유교적 세계관과 단군사상은 삼균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독립당 당의해석(黨義解釋)’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선철(先哲)은 말하였으되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여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함이 홍익인간(弘益人間)하고 이화세계(理化世界)하는 최고공리(最高公理)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머리와 꼬리(上下라고도 할 수 있다)의 위치를 고르게 함으로써 나라를 흥왕케 하며 태평을 보전함이 널리 인간을 유익케 하며 세계를 진리로써 화하는 가장 높은 공리라 함이다. 중국의 철인 한유는 말하되 “무릇 물건이 그 고른 것을 얻지 못하면 운다(凡物不得基平則鳴)”고 하였고 공자는 말하되 “적은 것을 걱정할 것 없이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不患均)”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과(寡)를 걱정하지 말고 불균(不均)을 걱정할지니 이는 동서고금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⁵⁵⁾⁵⁶⁾

53) “차아(此我) 동심동덕 이천만 형제자매여, 단군대황조께서는 상제에 좌우에 명을 내리시 오등에게 기운(機運)을 주시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562-564면 참조.

54) 샷사 미츠아키, 앞의 논문, 231면.

55)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당의해석’,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06면. 참고로 ‘수미균평위 흥방보태평’은 단군조선 시기 작성되었다가 실전되었다는 역사서인 신지비사(神誌秘詞)에 전해진다는 내용이다.

56) 대한민국 건국강령 제1장 총강 제1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그러나 민족의 독립을 위한 종교적 발상이 현실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조소앙의 관심은 서구사상으로 옮겨가게 된다. 근대 중국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알려지기 이전에 무정부주의 사상이 크게 유행하였다. 제국주의 열강의 이론적 첨병이었던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대항마로서 인간의 연대성과 사회성을 강조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 환영받았기 때문이다.⁵⁷⁾ 조소앙 역시 중국인 무정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1920년대 초부터 무정부주의에 경도되었다.

그는 1922년 상해에서 ‘한살림(韓薩任)’⁵⁸⁾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는데, 계급이 없고 정부기관도 폐지한 이상적인 대동사회인 ‘세계 한살림’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조소앙은 한살림의 실천강령으로 ‘모두가 함께 일하여 놓고먹지 않음(不素餐), 사유재산제를 폐지함(無私權), 남녀평등을 실현함(異性同權), 스스로 무장하여 혁명을 이룩하고 지킴(自強隊), 침략전쟁을 부인함(非戰爭), 국가와 민족 간에 화해함(민족연맹), 모든 민족과 국가 사이에 평등을 실현함(세계 한살림)’ 등 7개 조목을 제시한 바 있다.⁵⁹⁾ 이러한 한살림 7개 강령은 훗날에 정립된 삼균주의의 주요 내용이 되고, 한살림의 이상이 삼균주의의 최종 목적인 세계일가의 이상으로 계승된 측면이 있다.

육성교로부터 한살림에 이르는 조소앙의 사상적 변화는, 영성을 중시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으로부터 살림이라는 경제적이고 물질적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57) 강유위는 1923년 섬서성 강연에서, “최근 구미(歐美)에 아인(俄人) 극노포금(克魯泡金)의 호조(互助)의 의(義)가 성행(盛行)하고 있다. 호조(互助)는 곧 인(仁)이다. 인(仁)은 이(二)와 인(人)이다. 고로 인(仁)은 인(人)을 사랑하고 박애(博愛)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원용하고 있다. 샷사 미츠아키, 앞의 논문, 232면 각주 29.

58) 한살림은 ‘하나로 통합된 생활공동체’라는 뜻으로서 대동사회 및 대동사상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샷사 미츠아키, 앞의 논문, 239면. 이에 대해서 한살림에는 위와 같은 뜻 외에도 ‘韓民族을 살리는 공동체’의 뜻도 담겨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익, 앞의 논문, 103면.

59)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78-79면 참조.

인 영역으로 그의 관심이 이행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는 관념적인 종교 합일보다도 현실적인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를 궁극적 이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⁶⁰⁾

그러나 1920년대 이후부터 대부분의 무정부주의자가 공산주의자로 전향하자 조소앙은 무정부주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1941년에 작성한 ‘한국독립당 제1차 전당대표대회 선언’에서 “건설시기에 있어서도 국가와 정부와 법령과 군·경을 수요(需要)하는 때문에 본당은 무치주의(無治主義)와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⁶¹⁾고 하여 무정부주의와는 분명히 결별하는 모습을 보였다.

1917년 러시아혁명을 전후하여 사회주의는 전세계 청년 엘리트들에게 매력적인 사상이었고 조소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조소앙이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것은 제2인터내셔널에 임정 대표로 참석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1919년에서 1921년 무렵으로 보인다. 그는 영국 노동당 인사와 접촉하여 개량적 사회주의에 접하였고, 영국적 사회주의에 상당한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 차례 영국 노동당을 사회주의 노선의 표본으로 들기도 했으며, 귀국 후에는 자기의 노선이 영국 노동당의 노선과 통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좌·우 쌍방의 비난에 대응하였다.⁶²⁾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소련 순방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확인하고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조소앙은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자였기에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좌·우 분열을 걱정하고 연합전선을 희망하는 입장에 있었다. 좌·우 분열에 대한 우려는 그가 삼균주의를 세우게 된 1차적 동기를 형

60)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지영사, 2003, 130-131면 참조.

61)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제1차 전당대표회의 선언’,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79면.

62)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삼균주의자가 본 세계’, 「소앙선생문집 下」, 햇불사, 1979, 122-124면 참조.

성하고, 그는 평생 동안 좌·우 통합을 실현하고 민족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논할 때 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손문이 창시하여 중국 국민당이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삼민주의(三民主義)’⁶³⁾와의 관계이다. 조소앙은 1904년 일본에 건너갈 때 이미 형 조용하로부터 “손문전(孫文傳)”을 받아 읽었고, 손문은 1905년 동경에서 ‘민족·민권·민생’의 삼대주의(三大主義)를 처음으로 공표하였으며, 다음 해부터 삼민주의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조소앙은 메이지대학 재학 중 만난 대계도와 상해에서 신아동제사를 만드는 등 친분을 이어갔는데, 대계도는 1925년 ‘삼민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내놓은 이론가였다. 중국 국민당과 상해 임시정부는 같은 시대에 같은 적을 두고 싸웠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였으며, 조소앙 자신이 대계도 등 삼민주의 이론가들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으므로, 삼균주의 사상 형성에 국민당의 삼민주의 노선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삼균주의가 개인, 민족, 국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통합론을 취하였고 조소앙이 그의 저술이나 조직 이름으로 ‘대동’이라는 말을 즐겨 썼다는 점을 주목하여 강유위의 대동사상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⁶⁴⁾ 그런데 근대 중국에서는 강유위 외에도 많은 사상가들이 자기가

63) 손문이 중국 혁명, 즉 중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방향을 가리켰던 이론. 삼민(三民)이란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을 의미하는데,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포함하면서 민족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평등을 주장하는 '국민혁명'의 이론이다. 손문은 1905년에 삼민주의를 처음 주장한 이후 1924년에 제1차 국공합작을 맞이하여 신(新)삼민주의를 제창하는데, 이것은 민족주의의 측면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의 자유·평등'을, 민권의 측면에서는 보통선거제, 민생의 측면에서는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토지 혁명, '자본의 절제'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폐해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화민국은 현재도 헌법 제1조에 삼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64) 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부코, 2014, 42-45면; 신우철,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71-72면.

생각한 이상사회를 ‘대동(大同)’이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무정부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등 서양의 급진적 정치사상을 수용할 때도 ‘대동사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⁶⁵⁾ 따라서 동양의 고전적 이상과 서구의 평등이론을 결합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은 있으나 삼균주의가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삼균주의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독립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 아래 정립된 이념이므로, 삼균주의의 바탕에 민족주의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조소앙에게 있어 민족주의는 삼균주의 이념의 출발점이자 국가건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였으며, 바로 이와 같은 순수민족주의의 정향성이 사회주의를 비롯한 다른 민족운동 세력과 구별되는 삼균주의의 기축이었다는 평가도 있다.⁶⁶⁾

결론적으로, 조소앙은 한국의 전통사상으로부터 발굴한 ‘균등’의 개념을 토대로 민족주의와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등 서구이론을 받아들이고, 삼민주의와 같은 중국현대이론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삼균주의를 정립한 것으로 이해된다. 삼균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극단을 모두 배척하면서도, 서구의 특정이론을 일방적으로 추수하지 않은 독창적인 이론체계라 할 수 있다.

제2절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1. 삼균주의의 형성과 수용

조소앙이 삼균주의의 이론체계를 구체적으로 완성한 것은 1930년 무

65) 샷사 미츠아키, 앞의 논문, 223면.

66) 김인식,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민족혁명론’, 한국인물사연구 제16집, 2011, 295-296면 참조.

렵으로 보이지만, 그는 이전부터 전통사상과 외래사상을 두루 섭렵하면서 민족의 독립이라는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형성해왔다. 조소앙 역시 스스로 회고하기를 1919년 ‘대한독립선언’을 기초했을 때가 이미 삼균주의의 ‘배태기’였다고 말하고 있다.⁶⁷⁾

군국전제를 산제(剷除)하여 민족평등을 지구(全球)에 보시(普施)할지니, 차는 아 독립의 제일의(第一義)오, 무력검병을 근절하여 평균천하의 공도로 진행할지니, 차는 아 독립의 본령이오, 밀맹사전(密盟私戰)을 엄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할지니, 차는 아 복국(復國)의 사명이오, 동권동부(同權同富)로 일체 동포에 시(施)하여 남녀빈부를 제(齊)하며 등현등수(等賢等壽)로 지우노유(智愚老幼)에 균(均)하여 사해인류를 도(度)할지니, 차는 아 독립의 기치오. 진(進)하여 국제 불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체현할지니, 차는 아 한민족이 응시부활(應時復活)의 구경의(究竟義)⁶⁸⁾니라.⁶⁹⁾

‘대한독립선언서’는 남녀, 빈부, 지우(智愚), 노유(老幼) 4개 부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권동부’(同權同富), ‘등현등수’(等賢等壽)의 4대 강령을 제시하였다. 독립의 방법론으로 양성의 권리를 가지런히 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배움의 차이를 고르게 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도 배격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미 정치, 경제, 교육, 연령의 4대 부문에 관하여 기초적인 균등사상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⁷⁰⁾ 또한 대한의 독립이 단지 주권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재산,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복지

67) 삼천리 제3호(1948. 7. 1. 발행) 기사 가운데 ‘40년의 풍상기’, ‘서서로 사회당 대표로 갔다가’(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부코, 2014, 17면에서 재인용) 참조.

68) 구경의(究竟義)는 ‘궁극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69) 조철행,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 내일을 여는 역사 봄·여름 통합호, 2001. 118면.

70) 대한독립선언서가 정치(同權), 경제(同富), 교육(等賢), 사회(等壽)의 균등인 4균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는 분석으로는,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삼균주의’, 사학지 제 49집, 2014, 301면 참조.

를 향유하는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⁷¹⁾

한편 대한독립선언서는 독립의 첫 번째 의미로 ‘민족평등’을 내세우고 독립의 본령으로 무력검병 근절과 ‘평균천하’의 공도를 주장함으로써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균등의 가치를 민족적·세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고 있다.

‘대한독립선언’에서 싹틔운 삼균주의 사상의 맹아는 1919년 4월 11일에 발표된 임정 최초의 헌법문서인 ‘임시헌장’에서도 발견된다. 임시헌장 역시 조소앙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⁷²⁾ 조소앙은 10개조의 간략한 임시헌장 곳곳에 장차 삼균주의로 발전할 사상의 기초를 심어두었다.

임시헌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평등임”이라고 하였고, 공민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인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제5조), 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제6조). 특히 교육의 의무를 납세와 병역에 우선하여 규정한 것은 삼균주의 사상이 강하게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⁷³⁾ 또한 임시헌장과 동시에 선포된 임정의 ‘정강’ 제1조는 “민족평등·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이라 규정하여 삼균주의의 국제적 면모를 예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⁷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71) 송석윤, ‘조소앙의 헌법사상-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 133-134면 참조.

72)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영향 -임시헌장(1919. 4. 11)과 임시헌법(1919. 9. 11)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9, 2004, 12면;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2009, 170-174면 참조.

73) 황승흠,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011, 552면.

7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권 임정편 II, 一.대한민국 임시정부헌장 법률 및 명령, 1.임시정부 헌장.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進)하여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全廢)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임시헌장은 인권과 균등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제를 천명함으로써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며 독창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특히 강조하였고, 한국의 공식문건에서 역사상 최초로 사형폐지론을 명시하였으며, 오직 한국인에게만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 반문명적·차별적 형벌인 태형을 폐지하도록 하였다.⁷⁵⁾ 특히 양성평등, 선거권, 교육의무 규정은 당대의 중국 헌법문서와 비교해보아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선진적인 조항이라 평가되고 있다.⁷⁶⁾

이처럼 ‘대한독립선언서’와 임정 ‘임시헌장’에서 맹아적 형태를 드러낸 삼균주의가 구체적으로 정립된 시기에 관해서, 조소앙 자신은 “1926년에

75)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2009, 187-191면 참조.

76)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임시헌장(1919. 4. 11)과 임시헌법(1919. 9. 11)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9, 2004, 21-24면 참조.

이르러 한국유일독립당축성회를 조직하고 ‘삼균제도’ 일문(一文)을 저술하였다”고 하고 있다.⁷⁷⁾ 그러나 현재로서 삼균주의의 정립된 내용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30년 4월에 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라는 글과 1931년 1월에 한국독립당 기관지인 진광(震光)에 발표한 ‘한국독립당의 근황’이라는 글을 통해서이다.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에서 조소앙은 정치권리의 균등과 생활권리의 균등, 그리고 수확권리의 균등을 한국에 적합한 신사회주의(新社會主義)적 계획이라고 말하여 삼균주의의 기초적 주장을 하고 있다.⁷⁸⁾ 또한 그는 위 글에서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는데(제6장 ‘광주혁명의 진상’),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게 된 역사적 필연성을 밝히고 혁명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한 학생들에게 주목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혁명 전력의 중심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는 삼균주의가 광주학생운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한다.⁷⁹⁾

나아가 ‘한국독립당의 근황’에서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의 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정치, 경제 및 교육의 균등화를 내세운다. 정치적 균등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보통선거제를, 경제적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유제를, 교육의 균등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국비의무교육제를 각각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민족자결의 원칙을 자타민족에게 적용하여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압박받고 통치당하는 지위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고, 국가와 국가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일체의 전쟁행위를 금지하여 국제적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⁰⁾

77)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자전’, 「소앙선생문집 下」, 햇불사, 1979, 157면.

78)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73면(조소앙 지음,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앙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141면) 참조.

79)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102면 참조.

80)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의 근황’,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와 ‘한국독립당의 근황’ 속에 나타나 있는 삼균주의는 비록 내용이 간단하고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 이념적 지향과 대표적인 수단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삼균주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공식 반영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폭넓은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소앙은 1930년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일명 ‘상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면서 당의(黨義)와 당강(黨綱)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삼균주의 사상이 처음으로 공식 반영된다. 이후 한국독립당은 비록 수차례 재건과 재창당을 거치지만 임시정부의 집권정당으로 기능했고, 좌우 독립운동 진영 통합의 모체로 존재하였으므로,⁸¹⁾ 그러한 정당의 이념으로서 삼균주의가 채택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국독립당 당의는 일본의 “정치·유린과 경제의 파멸과 문화의 말살 아래서 사멸에 직면”한 민족의 현실을 차별의 언어로 재구성한 후, 그로부터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해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균등사회 실현의 사명을 도출해내었으며, “안으로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일가의 진로로 향”한다고 하여 균등의 세계적 실천을 천명하고 있다.⁸²⁾

한국독립당 초기에 채택된 8대 당강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민족혁명의 방법에 관한 부분으로, 대중적 혁명 역량을 결집하여 민중적 반항과 무장 투쟁을 수행하되 피압박 민족의 혁명운동과 연대한다고 하였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광복 이

108면(조소앙 지음,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앙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284면) 참조.

81) 한국독립당이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기보다 임시정부 그 자체였다는 평가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민족독립운동사 7권 대한민국임시정부, II 임정의 시련과 이동(1923-1936) 4. 제 정당의 활동, 1990(김희곤 집필 부분) 참조.

82)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당의’,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337면 참조.

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실시해야 할 정책을 제시한 부분으로, 보통선거제 실시와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 토지 및 대생산기관의 국유화에 의한 생활권의 평등화, 국비의무교육에 의한 교육권의 평등화 등을 통해 균등사회를 건설한다고 하였다. 제7항 및 제8항은 삼균주의의 국제적 실천 부분으로 민족자결과 국제평등을 통해 세계일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강은 당의를 더욱 세분하여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⁸³⁾

1. 대중에 대하여 혁명의식을 환기하고 민족적 혁명 역량을 총 집중할 것
2. 엄밀한 조직하에 민중적 반항과 무력적 파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3. 세계 피압박 민족의 혁명단체와 연락을 취할 것
4.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평등하게 하는 기본 권리를 보장할 것
5.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하여 국민의 생활권을 평등하게 할 것
6. 생활상 기본 지식과 필요 기능을 보급함에 충분한 의무교육을 공비(公費)로써 실시하고 국민의 수학권(受學權)을 평등하게 할 것
7. 민족자결과 국제평등을 실현할 것
8. 세계일가의 조성에 노력할 것

삼균주의가 한국독립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 채택된 것은 조소앙이 당규 제정위원⁸⁴⁾으로 참가한 ‘민족혁명당 당의’(1935. 6. 29.)였다. 여기에는 정치·경제·교육 부문의 평등과 광복·건국·세계평화의 3단계 혁명론을 명시하여 삼균주의의 뼈대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독립당 당의보다 오히려 국민전체의 생활평등을 반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83)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101-102면 참조.

84) 당규 제정위원은 김규식, 조소앙, 김원봉 3인이었다.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 구적(仇敵) 일본의 침탈세력을 박멸하여 5천년 이래 독립 자주해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⁸⁵⁾

다음으로 민족혁명당 노선에 대립하는 우파정당으로 이동녕, 김구 등에 의하여 1935년 11월에 결성된 한국국민당 창당선언은 삼균주의를 3대 원칙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들은 국가주권의 완전한 광복에 의한全民적 정치·경제·교육 균등의 3대 원칙의 신앙을 확립하고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으며...⁸⁶⁾

1937년 4월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하여 결성한 조선혁명당 역시 한국독립당이나 한국국민당의 당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당의를 가지고 있어 삼균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본당(本黨)은 全民족총단결(全民族總團結)으로써 아(我) 민족전선(民族戰線)을 강화(強化)하고 왜제국주의(倭帝國主義) 침탈세력(侵奪勢力)을 박멸(撲滅)하여 아(我) 국토권(國土權)의 자유독립을 회복(恢復)하며, 내(內)로는 일체(一切) 국민생활(國民生活)의 평등존영(平等存榮)을 확보하고 외(外)로는 우리를 평등(平等)하게 대(對)하는 국가 민족과 공동분투하여 인류공영으로 나아감을 절대사명(絕對使命)으로 한다.⁸⁷⁾

이어 1940년 5월 민족주의 3정당(한국국민당, 재건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합동한 ‘통합 한국독립당’(일명 ‘중경 한국독립당’)이 삼균주

85)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111면.

8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4(임시정부사), 1983, 753-754면(조범래, 한국독립당연구(1930-1945),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64면에서 재인용).

8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조선혁명당 1937년도의 선언 중 4. 본당조선혁명지정로(本黨朝鮮革命之正路).

의를 수용함으로써 삼균주의는 민족주의 민족운동 계열의 공통된 혁명이념으로 자리잡았다.⁸⁸⁾ 중경 한국독립당의 당의는 상해 한국독립당의 당의와 똑같다.⁸⁹⁾

삼균주의가 임시정부 차원에서 처음 개진된 것은 1931년 4월이다. 조소앙은 임정과 한국독립당의 취지와 목표를 중국 국민당 정부에 알리기 위해 임시정부 외무장 자격으로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이 선언에서 그는 한민족의 공동 요구는 민주독립국가의 확립과 균등체도의 실현을 통해 '균등체도의 민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임시정부의 주의와 정책은 한국독립당의 균등주의에 근간을 두고 비로소 결정되었다"고 하였다. 이 선언문은 재중 독립운동자 전원에게 배포되었으며, 5월에는 조소앙 외에도 조완구, 김철, 이동녕, 김구 등 국무위원 전체의 이름으로 남경에서 개최된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국민회의에 제출되었다. 이는 삼균주의가 임정의 정치이념으로 수용되었다는 입장을 최초로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⁰⁾

1930년대 이후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의 중심인물로서, 또 임정 외무부장으로서 정계 일선에서 활약하게 되고, 임시정부의 기능과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삼균주의를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채택하고 그 원칙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게 된다.

1941년 11월 임정 국무위원회에서는 조소앙이 기초하고 삼균제도를 국시로 채택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하 '건국강령'이라 한다)이 결의에 의해 통과되었다.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1941년 11월 28일 정식으로

88) 김인식, '삼균주의·「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임시정부 절대옹호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2011, 326면.

89) 상해 한국독립당, 재건 한국독립당, 중경 한국독립당의 당의는 내용상 차이가 없고,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는 아마도 한글 당의를 일본어 또는 한문으로 번역하고 다시 한글로 재번역하는 과정에서 자료들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범래, '한국독립당연구(1930-1945)',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70면 각주 427.

90)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105면 참조.

공포하고, 12월 8일 공보에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발표하였다. 건국강령은 삼균제도에 의한 건국원칙을 천명하고 삼균주의의 사상적 연원, 이념, 원칙, 제도 및 정책 그리고 구현방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망라하였다.

삼균주의는 건국강령이 공포됨으로써 건국이념의 ‘최고공리(最高公理)’⁹¹⁾로서 권위를 확인하게 된다. 건국강령에서 삼균주의는 원리·원칙의 수준에서 공리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졌고, ‘최고공리’라는 표현에는 삼균주의가 자명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⁹²⁾ 건국강령은 이후의 임시정부 헌법문서뿐만 아니라 해방정국의 제헌논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로 활용된다.

결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은 1930년대를 거치면서 그간의 이론적 빈곤과 사상적 방향에서 벗어나 삼균주의를 새로운 정치적 지표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그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좌·우 진영을 불문하고 독립운동 및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어 마침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다.

2. 삼균주의의 내용 - 건국강령을 중심으로

가. 균등주의

삼균주의는 원칙적으로 균등주의 혹은 평등주의이며, ‘균등’의 내용에

91) ‘건국강령’에서 삼균제도를 가리켜 ‘공리’로 표현한 대목은 세 군데이다. 우선 총강 6항에서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임”이라고 하였고, 총강 7항에서는 “최고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실시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며, 제3장 건국 7(ㄱ)의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발양하며”에서도 보인다.

92) 김인식, ‘삼균주의·「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임시정부 절대옹호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2011, 337-338면 각주22.

는 두 가지 ‘삼균’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① 정치의 균등, ② 경제의 균등, ③ 교육의 균등이고, 두 번째는 ① 개인과 개인 간(人與人) 균등, ② 민족과 민족 간(族與族) 균등, ③ 국가와 국가 간(國與國) 균등이다. 정치·경제·교육이라는 각 영역에서의 평등과, 개인·민족·국가라는 각 단계에서 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균등이 완전히 실현되면 인간은 비로소 ‘세계일가’의 이상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개인과 개인 간에는 정치·경제·교육 분야의 균등이 강조되었다. 이는 협의의 삼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정치적 균등을 위한 보편선거제, 경제적 균등을 위한 토지국유화, 교육균등을 위한 국비의무교육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민족과 민족의 균등을 위해서는 민족자결권이 가장 중시되는데, 여기서는 ① 1개 민족이 불합리한 소속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권리, ② 자유로워진 민족이 자유롭게 건국을 결정할 권리, ③ 자유로워진 민족이 정치·군사·경제·외교 등 건국강령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다시 타국에 소속치 않는 권리가 필요하다. 압박받고 정복당한 민족에게는 최소한 위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⁹³⁾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등에 관해서는 국제법상의 독립권, 대내주권 행사의 자유권, 생존권, 자기보호권, 자위권, 평등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존립의 필요와 민족대립 및 국가대립의 조건이 소멸되고, 세계인류가 공동으로 인류지상·세계지상을 인정하는 단계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민족 최고의 이상이라고 보았다. 우리 민족의 국가주권을 보위하고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⁹⁴⁾

조소양은 1930년 무렵 채택된 한국독립당의 주의·정책을 해설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독립당의 근황’에서 삼균주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3) 추헌수,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50면 참조.

94) 추헌수, 앞의 책, 156면 참조.

...그렇다면 독립당이 표시로 내걸은 주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인간과 인간, 겨레와 겨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균등한 생활을 주의로 삼는다”할 것이다.

무엇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균등을 꾀할 것인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보선제를 실행하여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를 실행하여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로 의무학제를 실행하여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이니, 이로써 나라 안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균등한 생활이 실현된다.

무엇으로써 겨레에 겨레가 균등하기에 이르도록 할 것인가? ‘민족자결’을 제 민족과 다른 민족에 적용시킴으로써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으로 하여금 압박을 당하고 통치를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무엇으로써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균등을 꾀할 것인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약소한 자를 겸병하거나 우매한 자를 치거나 혼란을 틈타 이득을 취하거나 남의 패망을 업신여기는 따위의 전쟁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나라로 하여금 서로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고 서로 침탈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생활에 있어 평등한 지위를 온전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사해일가, 세계일원이라는 최종목적들을 꾀할 수 있다 할 것이다....95)

조소앙이 작성한 임시정부 차원의 첫 삼균주의 공식문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외선언’(1931. 4.)에는 ‘민족균등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민족균등주의라 함은, 나라 안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이익과 권세를 고르게 누리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이익과 권세를 고르게 하는가. 보선제(普選制)로써 정권(政權)을 고르게 하고, 국유(國有)로써 이권(利權)을

95)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의 근황’,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108면(조소앙 지음,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앙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284-285면) 참조.

고르게 하며, 공비(公費)로써 학권(學權)을 고르게 한다. 나라 밖으로는 민족의 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음으로써 나라 안에서는 특권계급이 소멸될 것이요, 소수 민족은 침탈과 능욕을 면할 것인즉,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를 막론하고 그 이익과 권세를 고르게 한다면, 상하 경중의 차등(軒輊)이 될 바가 없을 것이며, 동족과 이민족에 대해서도 한 가지로 또한 이와 같이 하여...⁹⁶⁾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균주의의 목표는 ‘균등’에 있다. 조소앙은 균등의 차원을 ① 개인과 개인 간, ② 민족과 민족 간, ③ 국가와 국가 간으로 나누어 마침내 ④ 완전한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에 관해서 ㉠ 정치, ㉡ 경제, ㉢ 교육의 세 부분에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제도와 정책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체계적으로 확립한 뒤에도 자신의 사상을 설명할 때 ‘삼균제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이는 삼균주의 원칙이나 방향의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균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의미가 된다.⁹⁷⁾ 이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삼균주의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 11. 28.)이다.

건국강령은 총강, 복국(復國), 건국(建國)의 총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강에서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복국에서는 광복운동을 3기로 나누었고, 독립 후의 건국과정 역시

96) 국사편찬위원회, ‘대중국 외교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2008, 59-65면(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삼균주의’, 사학지 제49집, 2014, 307면) 참조.

97) 김삼웅, 「조소앙 평전」, 채륜, 2017, 82면 참조.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과 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삼균제도는 제3장 건국의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바, 건국강령의 내용 가운데 정치, 경제, 교육 부문의 균등사회 건설방안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⁹⁸⁾

정치 분야에서는 보통선거제도를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하여 전국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을 완비하고, 민중단체와 조직이 삼균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운영되도록 하였다. 보통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제5항 나목) 및 민중조직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균권제를 확립하여 소외계층이나 소외된 지방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대한 원칙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했다. 만 18세 이상 남녀는 신앙·교육·거주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불문하고 선거권을 가지고,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을 가진다(제4항 라목).⁹⁹⁾ 또한 인민은 참정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고자 하였다(제4항 가목).

경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운수, 은행, 전신, 교통, 전기, 수도, 인쇄소, 극장 등 공용적 주요산업과 대규모 기업은 모두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하였다(제6항 가목). 토지는 자력 자경인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농인 지위가 낮은 순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었고(제6항 아목), 토지의 상속, 매매 등을 금지하였다(제6항 라목). 일제

98) 대한민국건국강령 원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2호(1941년 12월 8일자),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헌법·공보), 253면; 임시정부의정원문서, 국회도서관, 1974, 21-25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99)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0년에 이르러서야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건국강령의 진보적 성격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였고(제6항 다목), 취약 노동자의 야간노동과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며(제6항 바목), 공인과 농민의 무상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명시하였다(제6항 사목). 또한 인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로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을 명시하였다(제4항 가목).

교육 분야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과 무상교육 실시를 핵심으로 한다. 초등교육(6세부터 12세)은 물론 고등교육(12세 이상)까지 전국 학령아동의 전부가 비용 없이 수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항 나목). 학령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무상보습교육을 시행하며, 학령을 초과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의식(衣食)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공급한다고 하였다(제7항 다목). 학령을 초과한 이유가 대개는 가난일 것이므로 면비보습교육을 받은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¹⁰⁰⁾ 나아가 국영 무상 교과서 발행(제7항 마목), 지방별 교육기관 설립(제7항 라목), 학교에 대한 국가의 감독(제7항 사목) 등도 규정하고 있다. 조소앙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함으로써 첫째로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둘째로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양·발양하고자 하였다(제7항 본문 및 가목 참조).

그 밖에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하여(제4항 나목), 모든 차별사유 중에서도 특별히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다.

위와 같은 구체적 정책들은 삼균제도를 통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균등의 실현이라는 이론적 체계 아래 구상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물론 일관

100) 황승흠,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011, 558면.

성과 체계성에 있어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3. 건국강령 수개(修改)논쟁

건국강령에는 ‘삼균제도’라는 용어가 모두 9차례 쓰였다. 조소앙이 작성한 건국강령 초안에는 ‘균생제도’, ‘균평제도’, ‘균등제도’, ‘균생주의’, ‘균등주의’, ‘삼균주의’가 두루 보이는데, 건국강령은 ‘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에서조차 어색함을 무릅쓰고 일괄하여 ‘삼균제도’로 통일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삼균주의가 과연 건국강령의 중심 이념으로 반영·관철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을 특정인의 사상과 일체화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또는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 의도적인 수정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¹⁰¹⁾

이 문제는 한국독립당 내부에서 당의를 규정하는 데서 있었던 논쟁이 건국강령으로 연장된 것이다. ‘통합 한국독립당’이 결성된 후 당 내부에서는, 1930년 ‘상해 한국독립당’ 시절 작성된 당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다. 차리석(車利錫)은 당의를 삼균주의로 파악하려는 조소앙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주의’ 위에 ‘조국광복’이 최상위 개념임을 역설하고, 삼균주의와 같은 특정한 ‘주의’에 얽매이면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국독립당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문호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였다¹⁰²⁾

건국강령이 공포된 다음부터 임시의정원에서는 조선혁명당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비판론·개정론이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우선 1942년 10월부터 11월의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건국강령의 규범적 성격, 강제성 여부, 헌법적 근거와 공포주체 등과 같은 형식적·절차적 논점뿐만 아니라 토지국유의 실시 등 실체적·내용적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

101)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지영사, 2003, 234-238면 참조.

102) 장석흥, 「임시정부 버팀목 차리석 평전」, 역사공간, 2005, 289면.

되었다.

우선 의원들은 의정원의 의결 없이 건국강령을 공포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조소앙은 임시약헌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국무위원회는 직권으로 ‘광복운동 방략 및 건국방안’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건국강령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면 의정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조선민족혁명당의 손두환 의원은 토지 국유화 문제는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사항이고, 국무위원회에서 결의는 할 수 있으나 의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건국강령에 대하여 내용을 수개하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법적 수속을 밟은 후 우리 민족의 공동한 강령이 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¹⁰³⁾

이어 1942년 11월부터 1943년 6월 사이의 약헌개정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서는 건국강령 내용의 헌법적 수용문제와 토지국유 등 사유제 배경 문제가 주요쟁점이 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상덕 위원을 제외한 다수 위원들(조소앙 위원장, 차리석, 최석순, 신영삼, 조완구, 조경한[안훈] 위원 등)은 건국강령의 내용을 헌법에 삽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건국강령 중 토지국유론은 수개논쟁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었는데, 신영삼 위원이 1942년 12월 8일 임시정부 의정원 약헌개정위원회 제3회 회의에서 “토지국유강령은全民動員(全民動員)에 방해된다”고 주장하자, 조소앙은 이에 반대하여 논쟁하기도 하였다.¹⁰⁴⁾

1943년 10월 14일에는 임시정부 의정원과 유림(柳林) 의원 등이 삼균주의를 비판하면서 ‘건국강령 수개에 관한 안’을 제출하였고, 12월 10일에는 “수개위원 5인을 선출하여 차기의회에 수개초안을 제출케” 하도록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조소앙, 최동오, 유림, 강홍주, 손두환을 수개

103) 대한민국임시정부 제34회 임시의정원회의 속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권(임시의정원 II) 참조.

104) 신우철,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89면 각주58 참조.

위원으로 선임하여 194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중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차와 3차의 두 차례에 불과했으며, 수개 범위와 방식, 기존 건국강령에 대한 문제제기, 혁명방략과 건국강령의 분리 여부 등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1944년 10월 28일 건국강령 수개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의정원 강홍주 의원이 삼균주의 건국강령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삼균주의는 역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토지국유론은 현실 파악이 없는 허구적인 제안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이에 조소앙은 방어적 입장에서 ‘건국강령’을 변호하면서 임시정부의 국호를 아예 ‘균치공화국’으로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⁰⁵⁾

1944년 11월에 열린 건국강령수개위원회 제3차 회의(최동오, 유림, 조소앙, 강홍주 4인 참석)에서는, 유림이 “건국강령에 혁명방략을 혼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혁명방략과 건국강령을 “따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자, 조소앙은 ‘건국강령’이 영구성을 띤 강령이 아니며, 미국과 소련의 강력한 영향력이 예상되는 과도기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제출된 건국강령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반론하였다.¹⁰⁶⁾

유림, 조경한, 박건웅 의원 등이 제출한 ‘건국강령 수개에 관한 안’이 반송됨으로써 위 논쟁은 결말을 맺지 못하고 끝났다. 이후에도 건국강령 수정 문제는 1945년 4월 의정원 회의에서 다시 거론되었고, 의정원은 독자적으로 박건웅, 김상덕, 안훈, 조완구, 최석순을 건국강령 수개위원으로 선정하였으나, 위원회가 구성된 지 4개월 만에 해방이 되어 건국강령 개정 작업은 마무리되지 못했다.¹⁰⁷⁾ 그러나 삼균주의에 따른 헌법구상에 관한 논쟁은 해방 후에도 계속될 것이었다.

105) 건국강령수개위원회 회의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권(임시의정원 Ⅲ) 참조.

106) 건국강령수개위원회회의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권(임시의정원 Ⅲ) 참조.

107)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143-144면 참조.

4. 해방정국에서의 삼균주의 실천운동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조선을 분점하자 좌·우간의 이념대립이 첨예해졌고, 이에 따라 삼균주의의 수용 내지 실천 문제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해방 이전에는 비록 논쟁은 있었을지언정 삼균주의가 좌익과 우익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이었던 반면, 해방 후 이념에 따라 분열이 가속화됨에 따라 삼균 중 ‘균권(均權)’은 좌파로부터, ‘균부(均富)’는 우파로부터 각각 배척당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토지구유론을 비롯한 급진적 정책을 문제 삼는 우파와, 계급혁명을 주장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삼균주의의 위상은 점차 위태로워졌다. 조소앙은 이념대립이 격화하고 분단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자 삼균주의를 민족통일의 기본원칙으로 발전시키려 했고, 삼균주의를 새 시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우선 토지 및 대생산기관 국유론을 완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유토지와 중소기업의 사영기업을 법률에 의해 보장한다고 하였다.¹⁰⁸⁾ 그러면서도 반민족·반민주 분자의 숙청과 적산(敵産)의 몰수 및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삼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1946년 12월 ‘삼균주의청년동맹’을, 1947년 3월에는 ‘삼균주의학생동맹’을 각각 결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빈민연맹과 빈민학회를 조직하려 했다. 조소앙은 1948년 3월 7일 발표한 ‘삼균주의학생동맹 선언’에서 “전인민은 교육상의 지력과 정치상의 권력과 경제상의 부력의 균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을 개시하고 있다. 즉 삼균주의 사회로 지향 발전하고 있다. 삼균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발전에 의하여 우리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다”¹⁰⁹⁾라고 하여 변함없는 실천의지

108) 한국독립당 제5차 임시대표대회 선언 중 당책(행동강령) “10. 국민의 현유(現有)한 사유토지와 중소기업은 법률로써 보장할 것.”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제5차 임시대표대회 선언’(1945. 8. 28.), 「소앙선생문집 上」, 혜불사, 1979, 338면 참조.

를 드러냈다.

그는 삼균주의의 재정립과 실천을 통해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하자 1948년 10월 한국독립당에서 이탈하여 사회당을 창당하였다. 사회당은 공산주의를 계급독재로, 자본주의 특권계급 연장론자를 보수반동의 입장으로 모두 비판하고 균등사회론을 더욱 철저히 강조하였다. 사회당 당강은 통일독립국가의 완성,全民정치와 계획경제의 실시, 개인·민족·국가 간의 평등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당 당책은 정치 11개조, 경제 11개조, 교육 12개조를 합쳐 전 34개조로 남녀적 서 간의 평등, 농지의 재분배, 노동법령의 제정·실시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해방 후 삼균주의는 반일항쟁을 위한 민족주의 이론에서 통일국가 건설과 균등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극좌와 극우 간의 대립이 격화하던 시기에 삼균주의는 더 이상 남북 어디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그가 가장 우려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남으로써 그 실천은 중단되고 만다.

5. 제헌헌법에의 영향

해방정국에서 삼균주의 실천운동이 현실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사상으로서는 삼균주의는 헌법 제정 과정에 스며들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삼균주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건국강령’은 해방공간에서 명멸했던 헌법초안들에 직접적이고 깊숙한 영향력을 행사한 헌법문서였다.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1946. 3. 1.)’, 민주의원의 ‘임시정책대강(1946. 3. 18.)’, ‘대한민국임시헌법(1946. 3.)’, 과도입법위원회의 ‘조선임시약헌(1947. 8. 6.)’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정헌법의 원형인 유진오 헌법초안과 권승렬 헌법초안에 이르기까지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의 흔적

109)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삼균주의학생동맹 선언’, 「소앙선생문집 下」, 혜불사, 1979, 101면.

은 질게 깔려있다.¹¹⁰⁾

유진오의 회고에 따르면 헌법초안의 작성에 참고한 자료는 9종(‘헌법 기초회고록’ 기준) 또는 10종(‘헌법해의’ 기준)인데, 그 가운데 임시정부의 공식 헌법문서로는 ‘건국강령’과 ‘임시헌장(1944)’를 들고 있다.¹¹¹⁾ 건국강령은 말할 것도 없고, 임정의 마지막 헌법문서인 임시헌장 역시 조소앙이 약헌개정위원장으로 작성을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진오가 참고한 해방정국의 다른 헌법문서들, 예컨대 민주위원회의 ‘임시정책대강’, 과도입법위원회의 ‘조선임시약헌’은 삼균주의 헌법사상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작성된 것이고,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과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 역시 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삼균주의 균등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¹¹²⁾

유진오에 따르면 건국헌법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국가의 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적인 균등의 원리를 채택하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장점인 각인의 자유와 평등 및 창의의 가치를 존중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일견 대립되는 두 주의가 한층 높은 단계에서 조화되고 융합되는 새로운 국가형태를 실현함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¹¹³⁾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수립’은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¹¹⁴⁾

제헌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

110) 신우철,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90-92면; 조석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수립의 꿈과 그 좌절’, 국제경상교육연구 제6권 제4호,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2009, 95-97면 참조.

111)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22면.

112) 송석윤, ‘조소앙의 헌법사상-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 158면.

113)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51, 177면.

114)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51, 10면.

다)”고 규정하여 균등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제1장 총강에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제5조)고 하여 헌법 전문의 이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영역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¹¹⁵⁾

제2장 국민의 권리 가운데 평등권이 자유권보다 먼저 규정되었으며(제8조), 그 내용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삼균주의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 바로 다음에 위치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¹¹⁶⁾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제16조)고 하여 균등에 입각한 교육권과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명시하였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제20조), 노동3권 및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¹¹⁷⁾ 등을 규정한 후에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두는 체제를 취하였다. 물론 건국강령이 교육에 관한 상세한 방책을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해 제헌헌법은 교육에 관해 한 조문만을 두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건국강령의 교육 구상은 법률 차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15) 송석운, 앞의 논문,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 154면.

116) 송석운, 앞의 논문, 154면.

117)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세계 헌법사에 유례없는 독창적 조항으로서, 경제적 균등생활의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귀속재산 불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층의 요구 등 시대적 배경 하에서 탄생하였다. 다만 이익균점권은 국회본회의 헌법제정안 심의과정에서 비로소 제안된 것으로서 삼균주의 및 임시정부의 헌법구상과 직접적인 연속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황승흠,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탄생 배경과 법적 성격 논쟁’, 노동법연구 제3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1면 이하 참조.

제헌헌법은 바이마르 헌법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농지개혁, 귀속재산 처리, 기업의 국유화 등 경제정책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신생국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에 독립된 경제 장(章)을 편성된 것이 바이마르 헌법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¹¹⁸⁾ 한편으로는 삼균주의에서 강조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¹¹⁹⁾

경제 장은 경제의 기본원칙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제84조)고 하여 균등론에 입각한 경제질서를 추구함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여 일방에는 포식난의(飽食暖衣)하는 국민이 있는데 일방에는 기한(飢寒)에 신음하는 국민이 있는 것과 같은 사태를 없게 함을 말한다.”거나,¹²⁰⁾ “강식약육, 낙오자패멸의 폐해를 일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 같은 인간 내지 국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들에게 가능한 한 평등한 물질생활을 향락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되었다.¹²¹⁾

118) “경제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설치하는 것은 18~19세기 헌법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한 신성불가침을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 …독일 와이말(저자 주: 바이마르)헌법을 위시로 하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20세기 각국 헌법은 경제에 관한 규정을 극히 중요시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많이 설치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의 예를 따라 본장에서 6조에 걸쳐서 경제에 관한 대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51, 176면.

119)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의 모방성 내지 독창성 여부에 관해서는 비교적 풍부한 논의가 있다.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김철수, 김효전), 5·5 중화민국헌법초안이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견해(이영록), 우리 헌법전통의 연장선에 있는 독창적인 규정으로서 삼균주의에 주목하는 견해(김영수), 조선임시약헌의 생활균등권의 연속이라는 견해(이경주), 건국강령을 비롯한 선행 헌법구상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견해(신우철, 서희경·박명림) 등이 주장되었다. 이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성낙인,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 135-139면 참조.

120)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51, 178면.

121) 박일경, 「신헌법대의」, 박영사, 1961, 332면.

나아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제85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여...”(제86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제87조 제1항)고 규정하였다. 천연자원과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 원칙은 비단 건국강령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 관내 독립운동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것이었고,¹²²⁾ 해방 이후 제헌헌법 성안 과정에서 성향이 다른 여러 정치세력이 참여하였음에도 대체적인 견해의 일치를 통해 종래의 입장이 견지된 것이다.¹²³⁾ 이처럼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의 국유 또는 국영 규정이 건국강령의 독자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건국강령의 구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방향으로 제헌헌법의 경제 각론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¹²⁴⁾

또한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제87조 제1항)는 규정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마르 헌법이나 일본 헌법의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민족적·국가적 균등론의 관점에서 무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대외종속 우려에 근거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이 규정의 존재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¹²⁵⁾

이처럼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임정의 임시헌장은 기본체계가 거의 일치하며, 전문의 내용도 상당 부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임시정부기와 해방기 헌법문서들이 제헌헌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정량적 평가로 입증한 연구도 존재하며, 특히 헌법 전문과 경제의 장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¹²⁶⁾ 제헌헌법은 서구의 특정한 헌법 이념과 내용

122) 전종익, ‘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2012, 221면.

123) 전종익,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2013, 6-40면 참조.

124) 서희경·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30집 제1호, 2007, 100-101면 도표4 참조.

125) 이영록,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헌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3, 80면 참조.

을 그대로 수입하였다거나 해방정국 미군정의 압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경유하는 근대 이래 장구한 헌법혁명 (constitutional revolution)의 정신과 역사를 반영한 것이었다.¹²⁷⁾ 즉 제헌헌법은 헌법형식과 이념 두 차원 모두에서 외국의 헌법이 아닌 한국의 선행 헌법구상들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써 균등, 평등, 삼균주의, 재산의 공공성 등에 대한 오랜 강조와 추구의 결실을 맺고 있다. 1919년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 이후 1948년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삼균주의에 기초한 균등을 사회경제적 정의로 인식하는 것에 진영을 불문하고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헌법문서의 기본이념이자 헌법정신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종래의 제헌헌법에 관한 연구는 유진오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그동안 한국헌정사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평가받아온 유진오의 역할에 비해 거의 주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소앙이 작성했던 임시정부의 헌정문서들과 제헌헌법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조소앙의 사상이 헌법정신의 기초를 놓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¹²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균주의의 균등이념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서 집대성되었고, 해방 이후의 모든 헌정구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¹²⁹⁾ 건국헌법의 체계와 정신을 만든 핵심 4인은 조소앙, 이승만, 신익희, 유진오이며, 그동안 ‘한국헌법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은 유진오였으나, 헌법의 체계, 원칙,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헌법정신에 관한 그것은 실제로는 조소앙이었다.¹³⁰⁾ 나아가 조소앙을 현재에 이르도록

126) 신우철,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62-63면 참조.

127) 박명림, ‘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건국 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434면.

128) 서희경·박명림, 앞의 논문, 77-111면;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돌베개, 2013, 333-338면; 신우철,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43-68면 등 참조.

129) 서희경·박명림, 앞의 논문, 82면.

한국헌법의 원형을 몇 십년간 만들고 다져나간 실질적 기초자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¹³¹⁾

요컨대 제헌헌법은 체계와 내용은 물론이고 헌법사상적 측면에 있어서도 건국강령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건국강령을 통해 제헌헌법으로 이어지는 헌정사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헌의회 의원들이 제헌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이념 및 가치로서 삼균주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삼균주의의 이상이 대한민국의 헌법제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절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안 제1독회 당시 최운교 의원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임시정부는 과거 약헌·헌법 등을 대외에 선포했고 그 가운데에는 정치, 경제, 사회의 삼균주의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헌헌법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한다. 이에 대해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인 서상일은 헌법 전문에서 보이듯이 삼균주의를 계승하여 만민균등주의를 천명하고 있다고 답한다. 재차 최운교가 “여기[헌법 전문]에는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가지가 들어 있으니 이것은 ... 삼균주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임시정부의 삼균주의를 거듭 강조하자, 서상일 위원장도 다시 제헌헌법은 삼균주의를 담고 있다며 그를 안심시켰다.¹³²⁾

제3절 소결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은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이었다. 조선의 봉

130) 서희경·박명림, 앞의 논문, 98면 및 106면.

131)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2009, 174면.

132) 제헌의회 국회속기록, 제1회 제18차 회의록(1948. 6. 26.) 8-9면 참조.

건적 폐습은 망국의 원인이자 타파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이고 다시는 옛 왕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일제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새롭게 건설할 국가의 기본이념과 구조를 함께 기획하여야 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전통사상과 서구이론을 평등이라는 일관된 체계 아래 종합하고, 좌우분열을 민족적 관점에서 조정하면서,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시도였다. 삼균주의는 국권의 회복과 봉건 적폐의 혁파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개인·민족·국가의 세 가지 층위 및 정치·경제·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독립운동과 건국의 이념을 차별의 언어, 평등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그것은 기껏해야 중국 헌법문서의 조잡한 편집에 불과하였을 수도 있는 임시정부 헌법에 정신적 부피와 깊이를 제공한 헌법사의 축복과 같은 존재였다.¹³³⁾

그러나 삼균주의는 해방 이후 역사적 격랑 속에서 남북 어느 곳에서도 지도이념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비록 현행헌법 곳곳에 남아있는 ‘균등’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원래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담지한 채 유지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삼균주의가 형성되어 건국강령으로 집대성된 것이 이미 약 80년 전의 일이고, 그 사이 한국의 상황과 조건들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달라졌다. 특히 건국강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도들 가운데는 보통선거제와 같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도 있고, 중등무상교육과 같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토지국유제와 같이 현재 상황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 과연 실현하여야 하는지 의문인 것들도 있다.

이처럼 시대의 상황과 조건들에 따라 구체적 제도와 정책은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삼균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모사(模寫)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현행헌법상 균등 개념을

133) 신우철,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63면.

재해석하기 위해서도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균등 개념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과 현대의 평등이론을 통해 현재 시점에 맞게 체계화하는 작업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 이는 시대를 온전히 담아내어 현재까지 그 흔적을 뚜렷이 남기고 있는 사상에 대한 합당한 예우이자, 삼균주의에 현대적 효용과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삼균주의의 구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균등 개념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시도해보고, 조소앙이 특히 강조하였던 교육 균등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균등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현대의 평등이론을 통해, 조소앙의 균등 개념을 현재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현행헌법에 화석처럼 굳어져 남아있는 ‘균등’이라는 문언에 온기를 불어넣어 되살리는 의식(儀式)이기도 하다.

제3장 균등 개념의 의미

제1절 삼균주의와 균등

1. 삼균주의의 의의와 한계¹³⁴⁾

사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사상이 형성된 시대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정치사상을 체계성과 적실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체계적 완결성이 높은 사상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상에서 시대적, 사회적 현실과의 적실한 조응관계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그때그때의 사고 과정을 축적하여 하나의 사상체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체계성이나 정합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¹³⁵⁾

조소앙은 20세기 전반기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한가운데서 손꼽히는 주요 정치지도자이자 불굴의 독립운동가였으며, 탁월한 이론가였다. 조소앙은 민족 앞에 주어진 독립과 근대화라는 핵심과제에 당면하여, 그리고 자신 앞에 전개되었던 긴박한 현실정치와 좌우 이념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정치사상을 반성적으로 숙고하면서 삼균주의를 형성해갔다. 따라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부터 해방 이후 건국과정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변동했던 한국의 정치현실과 긴밀한 조응관계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조소앙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어느 이론적 탐구자에 비해서도 독창적이고 체계적이며 정연한 이론체계를 구축하였다. 동시대의 많은

134) 이 부분은 윤흥근, '소양사상에 있어서 균등개념의 연구', 삼균학회 편역 「삼균주의론선(三均主義論選)」, 삼성출판사, 1990, 140-144면을 참고하였다.

135) 윤흥근, 앞의 논문, 140면.

사상적 저작물들이 사건의 진전을 추수(追隨)해가는 부분적 단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거나 아니면 교조적 이론들에 쫓겨 맞추어 현실을 설명, 처방하려는 것이었음에 비하여 삼균주의 이론은 적실성과 체계성을 겸비한 보기 드문 사상이었다.¹³⁶⁾

물론 삼균주의가 가지는 체계적 우월성은 어디까지나 동시대의 다른 이론들과 비교해서 도출되는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소앙은 칸트나 헤겔, 마르크스 등 대표적인 서구 사상가들처럼 인식론이나 인성론으로부터 정치사회론, 역사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두루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어디까지나 독립(복국)과 건국이라는 제한된 민족사적 정치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영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적실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삼균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주어진’ 사회현상의 내적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균주의의 적실성은 미래지향적이고 당위적인 것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진다.¹³⁷⁾

그러나 삼균주의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들은 이론 자체가 가지는 약점이 아니라 조소앙이 당면한 현실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결과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소앙은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적 폐습’이라는 두 가지 억압과 차별을 극복함으로써 ‘평등한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삼균주의의 균등 개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축된 이론적 개념이므로, 그 이론적 가치 또한 목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삼균주의의 구조와 균등 개념

136) 윤흥근, 앞의 논문, 141면.

137) 윤흥근, 앞의 논문, 141-142면.

삼균주의는 세계를 개인·민족·국가라는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인식하면서 각 층위에서 모두 균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형성할 당시인 제1차 세계대전 전후(戰後)는 오스만제국, 제정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등 다민족국가가 쇠락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피지배민족들의 민족단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우리 독립운동의 과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대에 민족과 국가는 서로 별도의 층위로서 분명히 구별되는 위상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치되어야 할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민족국가 시대가 개막한 이후에는 민족과 국가가 상당히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국가 중심체계가 강력히 유지되면서 민족과 국가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 다문화가정의 증가, 이주노동자의 폭증과 같은 최근 현상에 비추어 개인, 민족, 국가의 구별은 현재에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삼균주의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는 인식 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삼균주의의 또 한 가지 핵심 축은 정치·경제·교육 세 부분에서의 균등으로서, 이는 개인 차원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이다. 물론 조소앙은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을 통해 곧 민족과 국가 간의 힘의 균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그가 오직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성취를 민족과 국가의 자립과 부강이라는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이며 오히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과 국가의 힘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과 민족, 국가 간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일원적’ 방법론으로서 균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삼균주의 이론의 단순명쾌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등 개념

의 복잡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층위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어떻게 단일한 균등 개념이 입론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탐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논하는 균등 개념은 조소앙이 당대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독립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균등' 개념에 대한 일종의 공시적(共時的) 해석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조소앙이 생각했던 '균등'이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현행헌법의 해석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시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하고, 이는 제3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 동일출발의 기회평등

삼균주의에서 균등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삼균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균등'을 기회의 평등으로 해석하면서 삼균주의를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한 갈래로 이해하거나,¹³⁸⁾ 한발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평등론이 가미된 무차별적 평등 혹은 목적론적 평등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¹³⁹⁾ 그러나 기존 논의들은 조소앙이 균등을 어떠한 의도에서 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기회의 평등이나 불평등 완화, 완전한 무차별 등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엄밀히 밝히고 있지 않다. 삼균주의에서 균등 개념은 더욱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조소앙이 “일체의 중심이며 일체 원천”¹⁴⁰⁾이라고 한 경제적 균등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조소앙은 비록 토지와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사적 소유의 철폐에 따른 재산관계의 완전한 재편을 의미하는 것은

138) 여경수,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민주법학 제48호, 2012, 290-297면 참조.

139) 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부코, 2014, 118-120면.

140)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당의 연구방법',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01면.

아니었다. 건국강령은 이미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을 사영으로 하도록 하였고, 해방 직후에는 한발 더 후퇴하여 토지국유화를 포기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률로 보장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소비에트식 공산주의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그의 이념적 지향이기도 했다.

따라서 삼균주의에서 경제적 균등 개념은 동일출발의 기회평등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¹⁴¹⁾¹⁴²⁾ 조소앙은 모든 국민이 ‘균등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일한 출발선상에 놓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건국강령에서 국유화된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分給)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으로부터의 우선권을 줌”¹⁴³⁾

그밖에 일제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취약 노동자의 야간노동과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며, 무상의료의 대상을 공인과 농민으로 한 것 등에서도¹⁴⁴⁾ 삼균주의의 경제적 균등이 동일출발의 기회평등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소앙은 세 가지 균등 개념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141) 윤홍근, 앞의 논문, 158면.

142)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평등을 그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법-정치적 평등이고, 둘째는 사회적 평등이며, 셋째는 기회평등, 넷째는 경제적 평등이다. 평등에 관한 가장 복잡한 개념은 기회평등이라 할 수 있는데, 사르토리는 기회평등을 다시 동등접근(equal access)의 기회평등과 동일출발(equal start)의 기회평등으로 나누었다. 동일출발의 기회평등은 동등접근의 기회평등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개념으로서, 기회에의 동등접근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인을 출발단계에서 동일한 물질 조건 하에 놓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홍근, 앞의 논문, 153-154면 참조.

143) 건국강령 제3장 제6항 아목.

144) 건국강령 제3장 제6항 다목, 바목, 사목 참조.

다.¹⁴⁵⁾ 따라서 이러한 동일출발의 기회평등적 성격은 경제적 균등에만 머무른다고 볼 수 없으며, 정치적 균등과 교육적 균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소앙은 정치적 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신체, 거주, 자유 그리고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¹⁴⁶⁾ 모든 민중이 참여하는 전민적 정치기구를 수립하고 자치조직과 행정조직을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소양을 함양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⁴⁷⁾ 요컨대 정치적 균등 개념은 자유와 권리를 균등히 향유하기 위한 평등하고 전면적인 ‘참여’를 의미하고, 이는 정치권력 자체의 동등한 분점이 아니라 정치의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의 제공에 가까운 개념이 된다.

조소앙의 균등 개념이 동일출발의 기회평등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그의 교육균등 사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에게 교육의 궁극적 취지는 완인작성(完人作成)의 문제, 즉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하는 문제였고,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완전한 발현을 통해서 균등한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분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삼균주의에서 교육적 균등 개념은 동일출발의 기회평등이 계속 지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제도가 바로 ‘면비수학(免費受學)’, 즉 국비 의무교육제도이다. 특히 학령을 초과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의식(衣食)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공급하도록 한 것은,¹⁴⁸⁾ 그가 생각하는 의무교육제도의 성격 내지 효과가 동일출발의 기회균등에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준다.

물론 경제적 균등의 실천은 “인민의 물질 생활을 제고 향수케” 하는

14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권(임정편 II), 1971, 166-168면 참조.

146)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제1장 참조.

147) 건국강령 제3장 제5항 나목 및 제4항 가목, 라목 등 참조.

148) 건국강령 제3장 제7항 다목 참조.

것이고, 교육적 균등은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기능”과 “국민교육의 수준”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하여¹⁴⁹⁾ 결과평등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출발을 위한 분배적 조건의 개선만이 균등 개념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균등 개념의 중심에는 동일 출발의 기회평등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처럼 삼균주의 이론체계에서 균등 개념은 ‘동일한 출발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조건의 재분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경제·교육의 세 가지 균등 개념은 서로 독립된 범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탱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조소앙은 ‘한국독립당 당의 연구방법’에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균등이 실현된 결과를 ‘민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조소앙은 모든 국가구성원이 정치, 경제, 교육 측면에서 균등한 역량을 지니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⁵⁰⁾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히려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균등을 해석함에 있어 주목할 지점이다.

4.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조소앙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의 균등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따라서 균등 개념을 개인들의 동일한 출발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자원의 재분배로 해석하는 것은 그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층위를 넘나드는 균등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 조소앙이 실제로 균등을 사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할 필요가

149)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당의연구방법’,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01면.

150) 송석윤, ‘조소앙의 헌법사상-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 133-134면 참조.

있다.¹⁵¹⁾

조소앙이 균등을 자기 사상의 중심적 요소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18년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부터인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균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으나, 유사한 개념인 ‘평등’과 ‘평균’이 모두 전제(專制)주의 또는 제국주의 침탈의 반대어로 사용되고 있다.

군국전제를 산제(剷除)하여 민족평등을 지구(全球)에 보시(普施)할지니, 차는 아 독립의 제일의(第一義)오, 무력점병을 근절하여 평균천하의 공도로 진행할지니, 차는 아 독립의 본령이오,¹⁵²⁾

다음으로 삼균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개진되는 한국독립당의 당의와 당강(1930) 및 이를 해설한 ‘한국독립당의 근황’(1931)을 보면, 개인 간의 수준에서 균등은 선거권의 평등한 부여, 토지의 평등한 이용, 국비교육의 평등한 보급으로 설명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 차원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 분야에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출발을 보장하는 물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 제도의 개혁과 재분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소앙은 민족과 민족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민족자결의 원칙을 자치민족에게 적용하여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압박받고 통치당하는 지위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고, 국가와 국가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일체의 전쟁행위를 금지하여 국제적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³⁾ 따라서 민족 수준에서 균등

151) 이하의 내용은, 강정인·권도혁,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균등’개념의 분석 및 균등과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집 1호, 2018, 257-276면의 큰 도움을 받았다.

152)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대한독립선언서’,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30면.

153)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의 근황’,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108면(조소앙 지음,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앙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284면) 참조.

은 각 민족이 평등한 자결권을 가짐으로써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억압당하거나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되고, 국가 수준에서 균등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의 앞서 나온 전제의 반대어로서 제국주의의 전제적 지배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상태가 평등이자 곧 균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균등 개념은 ① 개인 차원에서는 ‘동일한 출발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조건의 재분배’의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② 민족과 국가 차원에서는 ‘전제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균등의 두 가지 의미는 서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조소앙은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에서 한민족이 처한 상황은 단지 일본의 침략에 의한 압제뿐 아니라 오랜 역사동안 누적되어온 전제와 악정에서 비롯된 노예화라고 본다. 또한 조소앙은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 교육적 지식의 세 요소를 모두 ‘힘’으로 인식하였다(權力, 富力, 知力). 따라서 봉건적 의미에서든 일본 제국주의의 의미에서든 전제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와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노예의 지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경제·교육의 힘을 충분히 누리는 것은 곧 전제적 관계에서의 해방의 조건이자 동시에 그 해방된 상태를 일컫는 것이 된다. 비록 개인 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민족 간의 자결권의 균등 및 국가 간의 국제적 평등에서 균등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그것은 삼균주의 이론체계에서 동일한 상태를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아래와 같이 세계 각국의 자본주의와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모두 전제정치라고 하여 비판하면서 전민적 정치 균등을 요구한 것은, ‘종속적 관계에서의 해방’이 균등의 핵심 개념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현하(現下) 세계 각국의 정태(政態)를 살피어 보면 영·미 자본주의국가에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자본가들이 전권(專權)하는 폐단이 보인다. 독일과 이태리 등 국가는 변상적(變相的) 군황(君皇) 히틀러 못솔리니

등의 나치스, 팻쇼독재를 감행(敢行)하면서 침략을 일삼고 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는 노농전정(勞農專政)을 실시하고 있다. 본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균등은 어떠한 1계급의 독재전정(獨裁專政)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한全民적(全民的) 정치균등을 요구하는 것이다.¹⁵⁴⁾

종합하자면 삼균주의에서 균등이란 전제로부터의 해방과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 결합된 것으로서 ‘모든 주체가 어떠한 것을 수행할 평등한 기회와 그것을 수행할 능력에 필요한 것들을 향유하며, 외부적 방해 없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종속(전제, 노예화)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⁵⁵⁾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균등이란 모든 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부여 받고, 자치에 필요한 것들을 향유하며, 또 자치를 방해받지 않고 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경제적 균등은 모든 개인이 경제적으로 예속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향유할 수 있음을 뜻하게 되며, 교육적 균등은 지식의 보편적 보급을 통해 누구나 능력을 함양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민족과 국가 차원에서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국주의와 전쟁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균등론의 궁극적인 목표가 종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때, ‘동일출발의 기회균등’은 모두가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직선주로의 시작점에 같은 방향을 향해 서서 한낱한 시에 출발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오로지 공정한 보상획득을 위한 동일출발만을 보장하면서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다채로운 복수성을 긍정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다른 의미에서 종속된 삶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⁶⁾ 따라서 개인과 민족, 국가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균

154)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당의해석’,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15-216면.

155) 강정인·권도혁,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균등’개념의 분석 및 균등과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집 1호, 2018, 268면.

156) 기회균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 구조

등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삼균주의에서 ‘동일출발의 기회균등’은 ‘종속적 지위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진화한다. 그리고 이는 ‘자유로서의 평등’이라는 역량 이론의 개념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제2절 교육 균등의 의미

1. 교육 균등의 의미

삼균주의에서 ‘교육’이라는 주제는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쟁점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신분제 아래의 정치적 불평등은 근대 대의민주주의라는 진보를 이끌어냈고, 자본주의 아래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주의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근대 서구사상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조소앙이 일본 제국주의 아래 잔존한 봉건적 폐습과 커져가는 자본주의적 차별을 목도하면서 정치와 경제 부문의 균등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조소앙이 정치·경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왜 하필 교육의 균등을 강조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대에 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로 답할 수밖에 없다.

가. 교육과 신분

전통시대에서 교육은 신분과 분리되지 않았다. 일부 양반계층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한 입신양명은 사회 모든 이들의 신화이자 규범이었고,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주되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심지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를 다원적·다층적으로 구성하는 기회 다원주의가 필요하다는 통찰력 있는 견해로는, 조지프 피시킨 지음, 유강은 옮김, 「병목사회」, 문예출판사, 2016 참조.

이들조차, 얼마나 교육받았느냐가 곧 지위와 결부되는 것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이는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기회는 금융, 신용 등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했고, 기회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게 된 것은 20세기 말에 비로소 나타난 현상인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¹⁵⁷⁾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특정한 신분에 독점되는 시스템은, 지역에 따른 격차는 있지만 보통교육이 일반화되는 193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사라진다. 충남 부여의 양반 마을과 상민 마을에 대한 박찬승의 연구는 근대 교육의 확산이 신분 의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전통 시대에 양반 마을의 구성원은 나이에 관계없이 상민 마을 사람들을 부렸지만, 두 마을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자 양반들은 더는 상민들을 드러내놓고 하대하지 못한다.¹⁵⁸⁾ 이런 의미에서 조소앙이 누구에게나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자고 주장한 것은, 봉건적 신분제도의 잔재를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국의 현상과 그 혁명추세’ 제4장에서 한국 혁명의 역사적 기초를 설명하면서, 일부 양반 계층을 제외한 농·공·상 계급에서 여자·농인·대다수에 이르기까지 2천 년을 하루같이 배울 권리를 박탈당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조소앙은 1948년 3월 발표한 ‘삼균주의학생동맹선언’에서 “모든 종래 사회의 역사를 유식과 무식... 사이의 투쟁의 역사”라고 하면서, 유식자가 무식자를 ‘무시’하는 것에 맞서 교육상의 균등을 획득함으로써 무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¹⁵⁹⁾ 따라서 조소앙이 말하는 교육이 좁은 의미의 학교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문

157) Nicholas Lemann, *The Big Test: The Secret History of the American Meritocracy*, 2000, p.155(조지프 피시킨 지음, 유강은 옮김, 「병목사회」, 문예출판사, 2016, 365면에서 재인용). 참고로, 미국에서 고등교육이 신분상승 기회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뒤늦은 1950~1960년대에 나타났다.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248면 이하 참조.

158) 박찬승, ‘종족 마을 간의 신분 갈등과 한국전쟁: 부여군 두 마을의 사례’, *사회와 역사* 제69집, 2006, 17-18면 참조.

159) 이 글, 제2장 제1절 1. 나. 역사적 기초 부분 참조.

화생활 전반 나아가 개인의 존엄에 관계하는 포괄적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¹⁶⁰⁾

그러나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신화는 전통사회에서만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제는 교육을 식민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학교교육에 대해 중앙집권적 통제를 가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고용과 임금을 차별화하는 학력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분할 통치를 꾀하였다. 또한 사립 민족학교를 탄압하는 방편으로 고용과 임금에서 관공립학교 출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¹⁶¹⁾ 아래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교육과 신분이 어떻게 전통사회와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결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제정한 조선교육령을 통해 한국의 교육정책을 운용하였는데, 한국 내에서의 교육을 보통교육으로 한정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규정은 아예 두지 않았다. 1918년부터 3개의 면에 1개의 보통학교를 두는 '3면1교주의'를 시행하여 1922년에 완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학교 취학률은 3%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기조도 유화정책으로 전환되어 보통학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1920년에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이른바 '내지(內地) 준거주의'에 따라 한국의 학제를 일본의 학제와 유사한 것으로 개편하였다. 나아가 1928년부터 '1면1교주의'를 추진하여 1936년에 완료하였는데, 완료 당시 보통학교 취학률은 26%였다. 이 비율은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43%까지 증가하였고, 남자의 경우는 60%에 육박했다.¹⁶²⁾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에게 보통학교(소학교, 초등학교)¹⁶³⁾가 사실상

160) 윤홍근, 앞의 논문, 151면 참조.

161) 이해영·윤종혁·류방란,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일제 강점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7, 91-100면 참조.

162) 이해영·윤종혁·류방란, 앞의 보고서, 16-17면.

163) 보통학교는 1938년에 소학교로, 1943년에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종학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보통학교 졸업자는 사회에서 높은 대우를 받았다. 보통문관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 다수도 보통학교 졸업자가 차지했으며, 각종 은행과 회사, 상점의 취업에도 보통학교 학력이 필수로 되면서 보통학교 졸업자의 사회적 위상은 일제강점기 내내 높았다.

한국인들은 1910년대에는 식민지 교육기관에 취학하기를 꺼렸으나, 1920년대 이후에는 앞다투어 입학하려고 하여 보통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극심한 입학난이 야기되었다. 보통학교 입학을 위해서 신입생 선발시험을 치르는 지역이 많았으며, 입학 경쟁률은 평균 2대 1에서 3대 1에 이르렀다.¹⁶⁴⁾ 이러한 현상은 일제가 학력에 따른 고용·임금상의 차별을 제도화하고, 취업에 있어서도 학교장의 추천이 큰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한 데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당시 한국인의 학교 취학 욕구가 얼마나 절실했던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¹⁶⁵⁾

우리 송의학교는 지방에서 만히 오는데 부모가 따라온 학생들은 별로 히 문제되지 안흐나 여자 홀몸으로 시험 치러 오는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유혹을 당할 염려도 없지 안코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입학지원자를 기숙사에 립시 유숙케 하는 방편이 잇습니다. 그런데 입학시험이 일단 끝나고 나서 거취가 결정될 때 합격되지 못한 학생들은 집에 돌아갈 준비도 하지 안코 기숙사에 들어 누어서 울고 잇는 광경을 해마다 겪고 잇어 학교 당국자들의 가슴이 여간 아프지 안습니다.¹⁶⁶⁾

아들이 고등보통학교 시험에 낙제하였음을 비관하고 잇던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시험지옥의 희생 - 광산군 서방면 오치리의 정해균씨는 지난 19일 오후 그 동리 앞 방죽에 빠져 죽었음을 발견하였다는데 정해균씨의 사랑하는 아들 경모군이 금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 시험을 추리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백명 모집하는데 응시자가 오백 사십 이명의 다수이엇느니

164) '가슴 아픈 초등학교 입학문제', 1936. 5. 17.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

165) 이해영·윤종혁·류방란, 앞의 보고서, 101-103면 참조.

166) 1936. 3. 29.자 동아일보 기사.

만큼 전기 정경모군은 입학되지 못하였다는데 정해균씨는 이것을 극도로 비판하던 끝에 수백석 추수하는 부모로서 그와 같이 투신 자살한 것이라고 한다.¹⁶⁷⁾

이처럼 일제가 학력과 고용·임금의 결부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은 경제적 차별과 연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은 교육이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거나 교육적 성취가 뛰어난 사람이 인격적·사회적으로 우대 받는 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규범력을 상실하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은 인정적 차원의 신분은 물론 경제적 차원의 신분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고, 이는 교육을 균등이 관철되어야 할 핵심영역 가운데 하나로 보는 삼균주의의 관점이 현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교육과 역량

신분과 결부된 전통시대의 교육과 달리, 조소앙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교육은 서구의 신지식을 체득하는 것이었다. ‘앓이 곧 힘’이라는 이성의 시대에 서구식 교육은 개인의 출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집단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서구 근대적 교육을 통한 집단적 역량의 증진이라는 아이디어는 조소앙이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구한말 개화기를 관통하였던 교육에 대한 이념은 바로 ‘교육 입국사상’(教育立國思想)이었으며, 서구의 지식을 습득하여 부국강병 또는 국가중흥을 이룩하려는 구상이었다.¹⁶⁸⁾ 국가의 공교육제도만으로 당시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민간 주도의 사립

167) 1936. 3. 23.자 동아일보 기사. (괄호는 저자 추가)

168)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3, 56면.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사학으로 불리는 원산 학교가 1883년에 개교한 이래, 1910년까지 학부의 인가를 받은 것만 모두 2,250여개에 이르렀다. 이는 갑오경장 이후 정부에서 설립한 관학의 수와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¹⁶⁹⁾

그러나 교육입국사상은 부국강병 내지 국권회복의 강한 목적을 가진 사상이었으며, 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사고는 없거나 미약하였다. 이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사학도 다르지 않았다.¹⁷⁰⁾ 조소앙 역시 교육을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으나, 무엇보다 교육을 개인의 역량을 발달시키는 핵심적인 권리로 보았다는 점에서 교육입국사상과는 차이가 있다. 종래 임시정부 헌법문서들이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접근하였던 것과 달리 건국강령에서는 교육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건국강령을 헌법상 교육조항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¹⁷¹⁾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소앙은 한국인의 교육 받을 권리의 제한을 일본인과의 차별 문제로 인식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은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물론 교과과정, 상급학교 진학 등 모든 측면에서 일본인과 다른 취급을 받았다. 조선교육령에 따라 한국인과 일본인은 별도의 학제에서 별도의 명칭을 가진 학교에서 별도의 수업연한과 수업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일본인 학교의 수가 한국인 학교의 수보다 훨씬 많았고, 예산도 분리 편성되어 일본인 학교에 월등히 많이 배정되었다. 교육기회와 교육시설의 차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해졌는데, 1935년까지 한국인 고등보통학교(중학교)는 남녀 모두 42개교에 불과하여 0.09%의 취학률을 보였다. 또한 고등보통학교를 마쳐도 일본 유학을 하려면 다시 중학교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일본 대학 진학을 억제하였다. 이에 1922년 11월에는

169) 홍석노, 앞의 논문, 59면.

170) 홍석노, 앞의 논문, 56면 및 60면 참조.

171) 홍석노, 앞의 논문, 65면 참조.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결성되어 조선에 민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모금운동이 벌어졌지만 실패하였고,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였으나 한국인의 비율이 1/3에 머물러 한국인의 고등교육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었다.¹⁷²⁾

따라서 앞서 제2장 제1절 2. 가. 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소앙은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 간의 교육환경의 차별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조선 학생들에게 일본 학생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서구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민족의 역량을 증진시켜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조소앙은 교육이 특정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거나 민족이나 국가 중심주의로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교육의 기회 균등이 개인과 민족,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민족적 ‘역량의 증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교육의 성질로 보아 개인의 완인육성 문제로 개인에 연결되고, 민족의 건전한 자격품성 및 재능을 양성할 필요로 민족에 치중할 필요가 있고, 지식은 국경이 없으니 국제적 성질이 농후하며 과학의 수입 및 수출은 일종의 국제 문화생활 중 불가분의 임무인고로 국제방면에 진정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인천재주의가 아니며, 민족본위의 고대식 결점에 함몰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가만능의 국가주의로 구치(驅馳)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교육상으로 보아 지식수준을 일반적으로 제고함에 제 1보를 두고 제2보로 일반대중의 두뇌과학주의를 실행하는 동시에 개인·민족·국제적 실제평등과 세계일가의 구경(究竟)목표로 혼도함양하는大本령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언(要言)하면 지(智)의 정도 제고가 지(智)의 횡적 보급과 균학주의 또는 지(智)의 내용으로 하여금 신인·신민·신세계 창조에 적합하도록 매진케 하자는 것이다.¹⁷³⁾

172) 이해영·윤종혁·류방란, 앞의 보고서, 26-31면 및 41면 참조.

173)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당의 연구방법’,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01-202면.

조소앙이 해방 후 발표하였던 ‘삼균주의학생동맹선언’은, 경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 경쟁은 연대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고, 소수보다도 다수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새로운 시대의 교육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교육 균등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연대적 경쟁에 의한 학습과 훈련과 체육으로써 소수보다도 다수 학생의 두뇌를 과학화하며 수족을 기능화하며 육체를 노동화하는 신민주학원을 건설할 것.¹⁷⁴⁾

이처럼 삼균주의가 정치·경제와 동등한 위상으로 교육 불평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교육이 대내적으로는 봉건적 신분체제를 극복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자주독립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양면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균등은 당대의 시대적 과제였던 이중의 모순을 적절히 간파한 문제제기이자 혁명적 방법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⁷⁵⁾

조소앙은 교육의 균등을 추구함으로써 지적(知的) 자유와 신분적 자유 나아가 민족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교육은 삼균주의에서 균등 개념이 가진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조소앙이 위와 같은 교육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찰할 수 있었던 것은 국학과 서학을 두루 익힌 경험 덕분이었을 것이다. 제3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위와 결부되는 교육의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

174)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삼균주의학생동맹 선언’, 「소앙선생문집 下」, 햇불사, 1979, 102면.

175) 조소앙의 의무교육론이 ‘신분계층간의 불균등’을 해결하고 ‘국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보습교육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교육적 균등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논문으로, 홍호선, ‘조소앙의 교육균등론’, 삼균학회 편역 「삼균주의론선(三均主義論選)」, 삼성출판사, 1990, 320면 및 328면 참조.

평등과 연결되고, 종속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의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은 ‘역량 접근’과 연결하여 재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2. 교육 균등의 핵심과제로서의 여성교육

건국강령이 교육적 균등을 추구하기 위해 무상의 의무교육과 보습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적 안배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하며, 교과서를 편찬하여 무상분급하도록 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조소앙은 교육 균등의 또 다른 주요 과제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는 삼균주의를 창안하기 훨씬 전인 일본유학기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조소앙은 유학 당시 집필했던 동유약초(東遊略抄) 제3권 마지막에 수록된 ‘부인론’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왜 여성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연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 여성이 왜 열등하고 약하며 어리석고 비천하며 종속되고 간사하며 겁이 많은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남성들의 ‘전제(專制)·압박·구속·편리’라는 논리가 여성의 목에 속박의 칼을 채웠기 때문이며, 이것이 곧 여성 차별의 근원이 되어 왔음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부인 문제를 대하면 벌써 남자의 연상(聯想)이 일어나고 남녀의 비교관념이 일어날 때는 얼른 벌써 남우여열(男優女劣)·남강여약(男強女弱)·남존여비(男尊女卑)·남주여종(男主女從)·내외양간(內外良奸)·내외용겁(內外勇怯)의 관습적 개념이 일어날 따름이로다.

과연 우리 여자는 이처럼 열하고 약하고 비하고 간하고 겁한 성질을 선천적으로 짙어지고 태어난 이상한 인종인가 남자더러 물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그들(爾等)은 본래 열약우매하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종속되었고 역사적으로 독립생활을 못하였다」 할지니 이는 다름 아니라 남자는 선천으로 권리행사자라 망상하여 전제하기 위함이고 압박하기 위함이며 구속하기 위하여 편리한 정책으로 혹 학리적 설명이라 빙자하고 혹 역사

적 인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현혹케 하여 우리 여자의 목에 속박의 약(鑰)을 굳세게 채우고자 하는 도다.¹⁷⁶⁾

그는 또한 19세기 이래 사상계를 풍미한 진화론을 들어 ‘여성이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女不及男)’이 마치 ‘인위도태설’에서 연유된 것인양 하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여성의 능력은 남성과 동등함에도 집안 외에는 활동을 금지시켜 부엌일과 바느질 등이 고작이며 학문이라고 해야 겨우 한글 정도의 익힘에 그치며, 견문은 붙어다니는 종을 통해 아는 정도이니 이로 인한 여자에 대한 관념은 마치 제2의 천성인양 되어왔다고 하였다.¹⁷⁷⁾ 이는 남자의 소위로 퇴화한 결과이고 결코 본래 천성이 그런 것이 아님을 자각하여야 과거의 폐습이 장래로 전해지지 않을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는 길은 현대학문(신교육)을 통해 수양하는 길이 첩경이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자각할지어다, 현대부인이여, 상제의 진리를 확신하며 남녀동등의 원리를 각득할 것이 현대의 학문을 수양하면 결과가 현출하리니 저 남자의 정책농락 중에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 저 남자의 권리행사에 낙망하지 말지어다. 대개 낙망은 자멸의 지름길이고 두려워 물러섬(畏縮)은 진보의 적이니 저들을 두려워 말며 저들을 원망하지 말고 다만 굳센 마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서 남녀동등과 남녀동능을 실현하소서.¹⁷⁸⁾

‘부인론’을 통해 표출된 남녀동등, 동능에 기반한 여성교육론은 1918년 무오독립선언서에서 ‘동권동부’로 남녀빈부를 제(齊)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 한국독립당 당책, 건국강령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강조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남녀균등’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고, 여성

176)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부인론’, 「소양선생문집 下」, 햇불사, 1979, 236면.

177) 홍호선, ‘조소앙의 교육균등론’, 삼균학회 편역 「삼균주의론선(三均主義論選)」, 삼성출판사, 1990, 324면.

178)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부인론’, 「소양선생문집 下」, 햇불사, 1979, 237면.

들에게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수호하는 주체로 활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¹⁷⁹⁾

이처럼 조소앙의 여성교육론은 단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성별에 따른 인정적 차원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삼균주의에서 균등 개념은 인정적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조소앙은 여성차별이 남성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지배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여성교육의 보급을 통해 여성이 남성의 전제(專制)·압박·구속·편리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하였다. 이는 균등이 평등이라는 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제, 압박, 구속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제3절 균등의 적용 모색

삼균주의의 균등 개념은 제국주의와 봉건적 관습의 다층적 억압과 차별에 맞서 독립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통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원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오늘날 비록 제국주의와 봉건적 관습은 적어도 조소앙의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지 않고 있으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의 본질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소앙의 시대와 오늘날은 불평등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과 목표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고, 삼균주의가 포착한 부정의의 모습과 그 해결방법으로서의 균등 개념은 여전히 탐구와 해석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 나아가 이는 현행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규범적인 정의(正義)로서 균등 개념을 재해석할 필요를 시사한

179)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남녀균등',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388-391면 참조.

다.

물론 삼균주의의 균등 개념이 현 시대에도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시대정신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상하는 평등의 핵심적인 요청은 인정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인정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이 왜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지 살핀 후, 과연 삼균주의 균등 개념이 이러한 평등의 시대적 요청을 담아낼 수 있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현행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균등 개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1. 평등의 시대정신과 균등

가. 인정적 평등의 부상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는 로마법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종래 정의론의 핵심 문제는 ‘어떻게 분배¹⁸⁰⁾할 것인가’였고, 이는 20세기 후반 영미권의 자유주의 전통 하에서 발달한 분배 정의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존 롤스와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이 정교한 분배 정의론을 전개하였고, 이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의 강조점을 사회민주주의적 평등과 통합시켜 나가면서 사회경제적 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의관을 제시하였다.¹⁸¹⁾

180) 서구 철학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재분배’(redistribution)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미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되어 있는 재화를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다시 분배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개입을 자유로운 교환에 반하는 강제력 행사로 이해하는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의 전통적인 어법이지만(예컨대,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1971, p.50 참조), 국가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분배와 재분배가 항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명확히 재분배를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분배냐, 인정이냐?’의 역서도 같은 이유로 재분배와 분배를 구별하지 않고 분배로 번역하였다.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프 지음, 김원식·문성훈 옮김,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사월의책, 2014, 15면 각주2 참조.

181) 다만 존 롤스의 정의론을 분배 정의로만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정 정의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견해로는, 잉그리드 로베인스,

이처럼 기존의 정의론은 주로 자원이나 재화의 평등한 분배에만 주목하고 사회관계에서의 상호 존중이라는 평등 측면은 소홀히 다뤄왔다. 그러나 ‘68혁명’에서 시작된 신좌파 운동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등 소수자들은 집단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소수자 운동은 사회에 분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부정의가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하고 드러내보였다. ‘인정 투쟁’은 빠른 속도로 현대의 정치적 갈등을 표현하는 패러다임 형식이 되었고, 이는 최근의 젠더갈등이나 세대갈등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정치철학자들은 여성의 돌봄 노동, 동성 결혼, 이슬람교도의 히잡 착용 등 분배로 포섭할 수 없는 정치적 요구의 규범적 토대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¹⁸²⁾ 1990년 전후부터 악셀 호네트,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¹⁸³⁾ 등 여러 철학자들이 ‘인정’, ‘차이’ 또는 ‘정체성’¹⁸⁴⁾을 정의론 담론으로 포섭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낸시 프레이저 역시 경제적 ‘분배’ 요구를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민족, 인종, 젠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이의 ‘인정’에 대한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정(recognition)은 우리 시대의 핵심어가 되었다”고 말한다.¹⁸⁵⁾ 이처럼 신좌파 사회운동의 성과인 ‘인정 투쟁’이 마침내

‘분배 정의론에 대한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은 타당한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그린비, 2016, 279-281면 참조. 그러나 잉그리드 로베인스 역시 로널드 드워킨과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 분배 정의 이론을 주장하는 앵글로-아메리칸 학문 집단이 대체로 차이와 인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182)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그의 1990년 저작인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서문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분출했던 신좌파 운동의 정치에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 정의 및 부정의에 대한 주장들 중 몇몇을 엄밀하게 성찰적으로 표현해보고 그 의미와 함의를 탐구해보고자 책을 저술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 지음, 김도균·조국 옮김,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34면.

183)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억압의 다섯 가지 범주를 착취, 주변화, 무권력, 문화 제국주의, 폭력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 지음, 김도균·조국 옮김,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122-151면 참조.

184) ‘인정(recognition)’은 악셀 호네트가 그의 책 ‘인정투쟁’에서 재발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이를 ‘차이(difference)’라고 개념화하였고, (주로 인정 정치의 반대파들로부터는) ‘정체성(identity)’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정의론 차원으로 격상됨으로써 ‘인정’ 정의와 ‘분배’ 정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신분과 계급이 결부되어 신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정 부정의는 곧 분배 부정의를 의미했다. 그러나 자유주의 이후 신분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해졌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롭고 동등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구별되고 위계화되어 있다는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고, 계급·종교·재산 등은 정치적 신분이 아닌 사회적 신분의 문제가 되었다.¹⁸⁶⁾ 이처럼 사회적 신분과 계급이 분리되는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정 부정의와 분배 부정의가 상호 환원되지 않는다.¹⁸⁷⁾ 프레이저에 따르면, 분배 정의 이론은 인정 주장을 포괄할 만큼 변형될 수 없고, 인정 이론들도 분배 주장을 다룰 수 없으므로, 분배 정의와 인정 정의는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환원하지 않고 모두 추구되어야 한다.¹⁸⁸⁾

따라서 인정적 차원의 평등은 재화의 균등한 분배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나아가 사람들이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존중받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 적극적 평등의 요청

평등원칙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진술은, “같은 것은 같게” 대

185)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지음, 김원식·문성훈 옮김,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사월의책, 2014, 14면.

186) 이는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통찰한 것이라고 한다. 레너드 C. 펠드먼, ‘지위 부정의’,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그린비, 2016, 351면.

187) 낸시 프레이저, ‘이성애 중심주의, 무시 그리고 자본주의’,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그린비, 2016, 95면 참조.

188) Nancy Fraser,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vol. 19, p.30 참조.

우받아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식이다. 동일한 것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아마도 평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금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등한 대우에는 가치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형식적 동등대우 원칙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동등대우 원칙은 하향평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며, 둘째, 동등대우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불평등한 구조를 영속화하거나 소수자로 하여금 이미 마련된 지배규범에 통일적으로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¹⁸⁹⁾

따라서 평등권에는 국가가 국민을 차별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시정할 적극적 의무가 발원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¹⁹⁰⁾ 평등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차별만 금지한다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질적 평등은 단순히 평등한 처우를 넘어서 불평등한 구조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실질적 평등의 핵심이 된다.¹⁹¹⁾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의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의론으로 ‘역량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들 수 있다. 역량접근법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제창한 것으로서 유엔의 인간개발지수를 산정하는 기본방법론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역량접근법은 사회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거나 불평등과 정의를 평가할 때 사람들의 기능(functionings)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 Sandra Fredman, ‘Substantive Equality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ume 14, Issue 3, July 2016, p.717-720 참조.

190)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77-118면 참조.

191)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397면.

역량접근법은 “수단보다 목적에 주목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고, 민주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능과 관련하여 개인별 차이를 적절히 헤아리고, 공공서비스 특히 보건과 교육 분야 서비스의 공정한 공급을 이끄는 데 적합하다.”¹⁹²⁾ 이처럼 역량의 관점으로 인간의 다양성에 접근하고, 사회적·환경적·개인적 요인이 인간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역량 접근법은 분배와 인정, 그리고 참여적 차원의 평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된다.¹⁹³⁾

무엇보다 역량접근법은 현대 복지국가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 맞게 개인의 역량을 균등하게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도, 국가 개입의 목표를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고정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로써 국가권력의 발동을 촉구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헌법상 자유권과 사회권이 서로 다르지 않은 권리이며 평등권이 양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역량접근법은, 국가 외에도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단순히 국가의 개입을 방어하는 것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할 수 없는 현 시대에 적합한 정의론이자 평등론인 것이다.

다. 균등의 현대적 의의

인정 차원에서 평등의 요구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1990년대를 전후하여 개념화된 것이니만큼 삼균주의에서 인정 균등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삼균주의에서도 인정 불평등의 대표적인 요소들인 신분, 젠더, 연령, 교육수준, 민족 간의 평등이

192) Amartya Sen, 『The Idea of Justice』, Penguin Books, 2010, p.263. 번역서인 「정의의 아이디어」의 번역이 부정확하다고 생각되어 원문을 직접 참조·번역하였다.

193) 잉그리드 로베인스, 「분배 정의론에 대한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은 타당한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그린비, 2016, 290면 참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조소양은 일찍이 1919년 무오독립선언서에서 남녀, 빈부, 지우(智愚), 노유(老幼) 4개 부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권동부’(同權同富), ‘등현등수’(等賢等壽)의 4대 강령을 제시한 바 있다. 독립의 방법론으로 빈부 격차 해소는 물론 양성의 권리를 고르게 하고, 배움의 정도나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배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조소양이 작성한 임시헌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평등임”이라고 하여 신분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건국강령에서는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하여(제4항 나목)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다.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조소양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은 일본유학기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서, 삼균주의로부터 연역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균주의의 토대가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삼균주의 개인 간의 균등뿐만 아니라 민족 및 국가 층위에서의 균등을 강조하였다.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은 아래와 같이 동화가 아닌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이룩되는데, 이는 인정적 차원의 평등에 정확히 부합한다. 민족 간 전제(專制)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개별 민족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족(異族)이 지닌 특질을 소멸시켜 자족(自族)에게 동화시킴을 민족주의로 오인하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 임시정부의 민족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것들과 다르다.¹⁹⁴⁾

조소양은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조차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自新)의 도(途)에 취(就)한다면 오인(吾人)은 그들의 이왕(已往)을 불구(不咎)하고 그들로 더불어 호조호혜(互助互惠) 원칙 하에서 세계의 참다

194) 조소양 지음, 삼균학회 편역, ‘제23주년 3·1절 선언’, 『소양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93-294면.

※ 괄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형한 것임.

은 공중공영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성포공(開誠佈公)¹⁹⁵⁾하며 화충공제(和衷共濟)¹⁹⁶⁾하려는 것”이라 하여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태도를 보여주었다.¹⁹⁷⁾

이처럼 인정 평등의 요구는 삼균주의 균등 개념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인정 불평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표지인 성별, 연령, 학력, 국적 등에 관해서 이미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조소앙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성적 지향과 장애 등 다른 인정적 사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치·경제·교육 영역에서의 구조적 차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균등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하더라도 삼균주의의 본지를 벗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실질적 평등은 형식적·소극적 동등대우의 한계를 지적하고, 모든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권적 요소와 사회권적 요소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기본권을 실현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한다. 삼균주의에서 서로 다른 차원과 서로 다른 층위의 균등 개념은 개인을 종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역량을 증진하고 존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소앙의 균등 개념은 소극적인 차별의 시정을 넘어 적극적인 균등의 실현을 지향하는 목적적·가치지향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역량의 증진과 실질적 자유 보장을 강조하는 역량접근법은, 자유와 평등은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고 평등은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 영역에 소재하는 핵심적인 불평등을,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종속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는 균등 역시 자

195) 중국의 역사가 진수(233-297)의 정사 삼국지 촉서(蜀書)에서 제갈량을 평가한 구절 가운데 “개성심 포공도(開誠心 布公道)”에서 유래한 말이다. “정성스런 마음을 열고 공정한 도리를 펼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6)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난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7)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당의해석’,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12면.

유로서의 평등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긍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이론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평등의 영역에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역량 접근법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핵심 역량이고, 삼균주의에서 균등의 중요한 한 가지 축이기도 하다. 센에 따르면 교육은 그 자체로 지적 자유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유의 기회를 확장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안정시키며 경제적 분배를 개선한다.¹⁹⁸⁾ 조소앙은 신분과 교육수준이 분리되지 않았던 전통시대에 누구에게나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자고 주장함으로써 봉건적 신분제도의 잔재를 제거하고자 했고, 일본 학생과 마찬가지로 조선 학생들에게도 폭넓은 서구식 교육의 기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증진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역량접근법과 삼균주의 양자가 인식하는 교육의 의의와 기능, 중요성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현행헌법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 일정한 방향을 시사한다.

2. 현행헌법 해석에의 시사점

가. 균등의 적용가능성

현행헌법은 균등, 균형, 평등의 용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나, 이를 종합해보면 헌법 전문과 정치, 경제, 교육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은 균등의 지도원리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평등선거원칙(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제116조 제1항)은 정치적 균등을, 경제의 균등발전(제119조 제2항),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제120조 제2항,

198) 아마르티아 센 지음, 정미나 옮김,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21세기북스, 2018, 164-168면 참조.

제122조) 및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육성의무(제123조 제2항) 등은 경제적 균등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은 교육 균등을 명시한 것으로 일응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에 삼균주의가 반영되었고, 균등이라는 문언이 현행헌법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헌법상 ‘균등’이 조소앙의 균등 개념에 따라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홉 차례의 헌법개정과정에서 제헌헌법의 체계가 적지 않게 변경되었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엄청난 역사적 격변을 거쳤으며, 조소앙의 균등 개념이 헌법이론과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된 바도 없는 마당에,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현행헌법을 연결하는 헌법정신의 연속성을 보증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¹⁹⁹⁾

그러나 삼균주의 균등 개념이 건국강령을 통해 제헌헌법의 균등 문언에 연혁적 기원을 제공한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는 점, 현행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이는 다시 전문의 ‘균등’ 개념과 결합하여 삼균주의 헌법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²⁰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균등 개념이 인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오늘날 평등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헌법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이어져 내려 온 균등이라는 문언을 조소앙의 균등 개념을 소생시키는 뼈대로 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²⁰¹⁾

아래에서는 만약 조소앙의 균등 개념이 현행헌법의 균등이라는 문언을

199) 비록 균등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소앙 헌법사상 가운데 정부형태 측면과 사회적 기본권의 우위 측면이 제헌헌법 이후 헌법개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일부 상실하였다는 견해로, 신우철,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64면 참조.

200) 같은 취지로, 권영건, ‘삼균주의운동의 현실적 의미’, 「삼균주의론선」, 158-159면 참조(김삼웅, 「조소앙 평전」, 채륜, 2017, 344면에서 재인용).

201) 오늘날 승자독식으로 균열된 대통령제 정치구조와 양극화로 대립·고착된 경제·교육구조 속에서, 합의에 의한 통치와 균등경제·균등교육을 강조하는 조소앙 헌법사상으로의 ‘인고적(引古的) 회귀’를 통해 새로운 헌법적 대안을 발견해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논문으로, 신우철,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64면.

통해 적용될 수 있다면, 예컨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해석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교육의 기능과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

교육은 개인이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쉐의 설명과 같이 교육은 그 자체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아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사회적 격차가 완화되고 민주주의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이고,²⁰²⁾ 교육을 통해 개인의 민주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민주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⁰³⁾

202)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48.

203) 헌재 1994. 2. 24. 93헌마192, 판례집 6-1, 173, 177.

교육에는 학교교육·사회교육·가정교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의 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을 뜻한다.²⁰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보고 있고,²⁰⁵⁾ 헌법재판소도 일부 결정에서 그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자유권적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²⁰⁶⁾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자유권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1조 제1항의 편제와 ‘받을 권리’라는 범문에 반하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수식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개인이 국가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교육시설과 교육과정을 요구할 권리를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하나의 기본권으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평등권의 내용을 단지 자유권의 보장형식으로 바꾸어 서술한 것일 뿐이다.²⁰⁷⁾

이처럼 국가에 대한 교육 급부 제공을 요청하는 문제를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려는 것은, 사회권으로 보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사법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⁰⁸⁾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 가운데

204)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노기호 집필 부분), 「헌법주석 I」, 박영사, 2013, 1049면.

205)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노기호 집필 부분), 「헌법주석 I」, 박영사, 2013, 1046면.

206) 가령, 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판례집 20-1상, 720, 731.

207) 한수웅, 「헌법학」(제11판), 법문사, 2021, 991-992면 참조.

208) 자유권의 전국가성을 존재론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법치국가적 배분원칙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개인에게 유리하게 자유의 존재를 추정하고 이를 제약하는 국가에 정당화사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입장도 위와 같은 견해로 볼 수 있다. 김하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과 내용’,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6, 341-344면 참조.

자유 의 기반이 되는 핵심조건에 관해서는 비록 그것이 사회권이라 하더라도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과잉금지원칙 또는 합당성의 원칙²⁰⁹⁾에 따라 심사하면 족한 것이지, 이를 처음부터 자유권으로 전환시켜 심사하는 것은 권리의 속성과 맞지 않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나아가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중 자유권적 성격이 문제되는 사례들은 부모의 충분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필요한 공교육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Cherry Picking)하거나 입시전략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할 의도로 다투는 것들이 많다.²¹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권의 제한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반면, 오히려 교육 역량이 부족한 계층, 성별, 지역에 대해 교육 급부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은 사회권 또는 평등권의 문제로 다루어져 사법통제가 밀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이미 교육 역량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관철시키는 도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활용될 위험이 있고, 자칫 교육 균등론이 추구하는 원래 목적과는 반대 방향의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급부 형태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²¹¹⁾

209) ‘합당성(reasonableness)의 원칙’은 샌드라 프레드먼이 제안하는 사회권의 심사기준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복지법제가 갖추어진 국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은 입법부에 헌법적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수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당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이 글의 주제는 평등권의 내용 및 심사기준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권의 심사기준인 합당성의 원칙에 관한 논의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기로 한다.

210) 예컨대, 학교교육을 우회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막으려는 검정고시응시자격 제한을 다투거나(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검정고시제도를 입시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정고시 합격자의 채용시를 제한하는 것을 다투거나(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등), 만 6세 미만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금지하는 취학연령기준을 다투는 사례(헌재 1994. 2. 24. 93헌마192) 등이 있다.

211) 물론 학교 교육의 범위 밖에서 개인의 인격발현으로서 교육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의 교육권한과 충돌하는 경우 법익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 교육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절차적 참여권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조화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균등론을 직접적인 해결지침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별도의 문제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사회권적 성격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기능과 목표에 있어서 자유의 확장이라는 점이 소홀히 다루어질 필요는 전혀 없다.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과 목표, 적극적·실질적 평등 이념으로서 균등 개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권과 평등권의 일반적 심사기준보다 상향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정헌법은 삼균주의에 충실하게 그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만 규정하였으나, 1962년 헌법(제5차 개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앞에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하였다. 이러한 교육조항의 개정이 어떠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에 발간된 문헌을 보면, ‘능력’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²¹²⁾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란 그 소질과 경제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²¹³⁾

능력은 그 자체로 차이를 전제한 개념이다.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문장 자체로 자칫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능력’이 어떤 의미인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212) 윤세창, 「신고 헌법」, 일조각, 1963, 153-154면.

213) 한태연, 「(신고)헌법」, 법문사, 1963, 276면.

우선 ‘능력’의 의미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현재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능력’을 ‘정신적·육체적 능력’으로 보면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재산·가정·환경·성별·인종 기타 사유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²¹⁴⁾ 물론 이는 개인의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이러한 논리는 결국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 허용되는 유일한 차별사유로서 개인이 타고난 요건인 ‘능력’이 부각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한발 더 나아가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가 헌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능력은 교육에 있어 허용되는 유일하고도 적극적인 차별사유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²¹⁵⁾

초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관하여,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하여 능력 이외의 사유에 따른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였다.²¹⁶⁾ 그러나 최근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고 교육제도에서 ‘수학능력’은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이며,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²¹⁷⁾

214) 박창언,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해석: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95면;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3, 138면 참조.

215) 한수용,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19권, 2008, 8면 참조.

216) 헌재 1994. 2. 24. 93헌마192, 판례집 6-1, 173, 177-178

217)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능력’을 ‘수학능력’으로 이해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문구를, 학업성취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正義)를 ‘필요(必要)의 정의’가 아니라 ‘응분(應分)의 정의’라고 보는 것 같다.²¹⁸⁾ 이는 헌법재판소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 능력에 따른 자원의 분배방식을 의미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²¹⁹⁾를 적용하거나 적어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과연 헌법 제31조 제1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 능력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재 분야에서 타고난 특출난 재능을 의미하는 gift, 특정분야에 있어서 타고난 (때로 후천적인) 재능을 의미하는 talent, 직업능력과 관련된 어떤 상태나 일 따위에 대해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능력으로서 competency 등이 있다. 헌법에서 능력은 특정한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일반 용어로서 ability를 사용하며, 헌법의 영문 법령에서도 abilities를 사용하고 있다.²²⁰⁾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능력은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논쟁적인 개인차 변인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세부 전공 영역에 따라 보다 협소하게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논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능력은 특수한 경우나 특정 학문 분야에서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특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설명

218) 필요의 정의와 응분의 정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김도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아카넷, 2020 참조.

219) 능력주의(Meritocracy)는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저서인 「The Rise of the Meritocracy」(1958)에서 디스토피아 미래사회를 예측하면서 사용한 조어(造語)인데, 현재 지위와 자원의 분배기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의 분배구조를 떠받치는 핵심원리로서 ‘능력주의’의 역설과 비판점에 관해서는, 특히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마이클 셴델 지음,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등 참조.

220) 한국법제연구원 번역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력을 지녀야 하며, 교육행위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²²¹⁾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행위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에 관한 것이고, 개인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주의가 실제로 사회의 작동원리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 혹은 부의 분배방식으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행위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적어도 교육 자원의 분배에 관해 ‘능력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아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균등론의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문구가 균등의 의미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능력의 의미도 균등론에 입각하여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전문의 ‘능력’이 능력에 따라 차등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능력주의를 일컫는 것이라면, 국가의 역할은 단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측정하는 일에 한정될 것이다. 그리고 능력 경쟁에서 패배한 국민은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분배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전문이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결과를 당부한 것은 능력주의의 관점에서는 모순된 요청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헌법은 형식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끔 역량을 보호·증진하여야만 비로소 기회균등이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고 본 것이 아닐까.²²²⁾

221) 박창언,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해석: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96면.

222) 이와는 달리, 헌법 전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는 형식적 평등에 따른 기회의 균등보장과 자의적 차별금지를 의미하고,

이처럼 헌법 전문이 규정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지, 능력주의에 따른 자원배분의 기초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즉 여기서 능력의 의미는, ‘능력이 없으면 하지마라’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라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이다.²²³⁾ 따라서 헌법 전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 역시, 능력주의에서 자원의 분배기준으로서 기능하는 능력이나 실적 또는 업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실현조건으로서의 ‘역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능력’을 ‘역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원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을 갖춘 건강한 민주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능력주의 원칙과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에서만 기회균등 원리를 파악하면 특정한 시험을 통과하는 데 적합하고 유리한 특정 능력만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특정한 성과만이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와 이점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 기준으로 간주된다. 오로지 사회를 출생시점부터 단일한 목표지점을 향한 대규모 경쟁체계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단일한 인생 경로와 단일한 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채점이 기회균등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²²⁴⁾ 모두가 동일한 직업군을 선호하고 모두가 동일한 삶의 방식과 목표를 추구하는 획일적인 교육으로부터, 삶의 다채로운 복수성²²⁵⁾에 뿌리를 둔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따른 결과보정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의미하여, 평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헌법의 지향가치로 선언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8-9면 참조.

223) 한민족의 독립 능력과 관련하여 조소앙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능력이 없으면 하지마라’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라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강정인·권도혁,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균등’개념의 분석 및 균등과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집 1호, 2018, 267면 참조. 조소앙이 개인과 민족, 국가를 불문하고 일관된 논리체계를 정립하였음에 비추어, 민족의 자립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립에 필수적인 교육 능력에 관해서도 같은 개념에 기초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224) 김도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아카넷, 2020, 259-265면; 조지프 피시킨 지음, 유강은 옮김, 「병목사회」, 문예출판사, 2016, 32-35면 참조.

않는다면,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일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도 건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은 경쟁체제에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별된 학생들에게 더 우수한 교육이라는 전리품을 획득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종이나 가정형편, 장애, 수학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신의 민주적·사회적·문화적 역량을 다양한 방향으로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기회와 더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능력’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해하고 있는바와 반대 방향으로, 예컨대 지역균형선발제도와 같이 기존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의 정당화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적어도 초·중등교육 또는 의무교육 과정에서 ‘능력에 따른 차별’은 오히려 교육 역량이 낮을수록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 점에서 승인될 수 있고, 그것이 역량이론에 의해 재해석된 균등론이 말하는 교육에 부합한다. 결국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균등’은 소극적인 차별 시정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균등의 실현이라는 목적지향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²²⁶⁾²²⁷⁾²²⁸⁾

그런 의미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문구를, 헌법이 오로지 ‘수

225) 아마르티아 센은 역량 접근법이 우리의 삶과 관심의 다채로운 복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아마르티아 센 지음, 이규원 옮김, 「정의의 아이디어」, 지식의 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2019, 261-262면 참조.

226) 물론 국가가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소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27)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는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여 균등론에 부합하는 결정례도 발견할 수 있다.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출발기회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헌재 2000. 4. 7. 98헌가16등)

228) 헌법 제3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기존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으로는, 김지혜,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교육의 불평등’, 법과사회 제53호, 2016, 163-164면 참조.

학능력'에 의한 차별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649)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해석론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의 제공을 마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인 능력주의와 동일하게 해석함으로써,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두 제도, 즉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능적인 요소가 중시되는 직업공무원제도와 전체 국민의 자유의 기반을 확대하고 전인격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제도에서 '능력'을 동일시하고 있다.

균등이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수용하고 있고 그것이 동일출발의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출발의 시작점은 초·중등교육 이전이 아니라 초·중등교육 이후에 그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불가피하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문구가 능력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해석론을 채택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은 고등교육으로 엄격히 한정될 필요가 있다.²²⁹⁾ 물론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학문과 진리 탐구를 위한 교육인지, 직업 선택에 있어 신분적 표지를 제공하는 교육인지에 관해서는 규범적·현실적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제공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 곧바로 헌법 규범의 해석으로 통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적으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할 수 있다면, 사회권을 더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는 표지로서 '취약성'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 또는 '성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권적 성격에 반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능력주의에 따른 교육자원의 차등 분배를 명한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연혁적 기원인 삼균주의가 내세웠던 교육 균등의 이상과도 맞지 않는다.

229)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한다고 하면서도,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즉 의무교육을 제외한 그 밖의 교육과정에만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헌으로,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3, 316면.

(3) 학업성적·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금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직접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나 인격적 모멸을 금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육 균등의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축이었다. 비록 신분과 교육이 결부된 전통사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학교는 ‘성적 우수자’와 ‘실패자’로 범주화되어 있다. 최근의 주요 대입 전형 방식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성적 우수자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갈라, 성적 우수자들의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집중관리하거나 자율학습 전용실을 제공하는 등 그들에게만 자원이 집중되면서 대다수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²³⁰⁾

이러한 교육자원 분배의 왜곡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차별받는 학생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학생들이 낮은 학업성적 자체로 불행하고 우울한 것보다, 그로 인해 차별받는 경험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우울해진다.²³¹⁾ 성적에 따른 낙인과 인격적 차원의 차별은 학교를 마친 후에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아 오랜 시간 지속되며,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람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듦으로써 개인은 물론 사회를 병들게 한다. 12년간의 초·중등 교육과정 내내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안고, 저학력·저학벌의 꼬리표를 달고 주눅 든 상태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의 목표가 아님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수많은 연구결과는 성적에 경제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³²⁾ 현재 교육은 부모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만들어

230) 정훈, ‘교육 정의의 내용에 대한 시론적 고찰: Fraser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 31권 제1호, 2017, 150면.

231) 김지혜,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교육의 불평등’, 법과사회 제53호, 2016, 173면 참조.

232) 정훈, 앞의 논문, 148면.

진 성적을 지렛대 삼아 다시 부를 세습하는 연결고리로서 활용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지위의 불평등과 분배의 불평등이 분리되지 않았던 전근대 신분사회로의 퇴행을 연상케 한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균등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삼균주의의 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균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삼균주의 이론체계에서 균등은, 개인 차원에서는 ‘동일한 출발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조건의 재분배’의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민족과 국가 차원에서는 ‘전제(專制)의 반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두 가지 상이한 균등 개념은 ‘종속적 지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이해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수단으로 이해하면 통일적인 개념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조소앙은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고르게 교육받을 기회를 강조하였고 교육을 통해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제국주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이는 삼균주의에서 교육 균등의 의미와 기능이 위 균등 개념에 정확히 부합함을 드러내준다.

다음으로 삼균주의 균등 개념이 평등의 현대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헌법상 ‘균등’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날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였다. 균등은 인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예컨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이 현행헌법상 ‘균등’이라는 문언이 포함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결론

제1절 요약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교육을 받을 권리,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에 관한 조항에서 ‘균등’(均等)이라는 단어를 모두 네 차례 사용하고 있다. 경제의 장에서는 비록 균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균형’이라는 단어를 무려 다섯 차례나 사용하면서 경제 주체 간의 균형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행헌법 전문에 명시된 핵심 가치이자 교육과 선거 조항 그리고 경제의 장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균등 개념은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제헌헌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현행헌법까지 ‘균등’이라는 문언이 이어지고 있는 데 비해, 그간 균등의 의미에 대한 정치철학, 법철학, 헌법사상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 논문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탐구되거나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없는 균등 개념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형성하고 정립하였던 일제강점기는 일본제국주의 침탈로 국권을 잃고, 국민들이 정치적 유린과 경제적 수탈 및 교육적 탄압을 당했던 시기였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주의적 관습을 혁파해야 하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있었다. 조소앙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개인·민족·국가의 세 가지 층위 및 정치·경제·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독립운동과 건국의 이념을 차별의

언어, 평등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삼균주의 이론체계에서 개인적 층위의 균등 개념은 ‘동일한 출발을 위한 정치적·경제적·교육적 조건의 재분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균등한 조건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족과 국가 층위에서 균등 개념은 ‘민족의 자결권 확보와 제국주의 지배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언뜻 이질적으로 보이는 균등의 두 가지 의미는 ‘종속적 지위에서의 해방’이라는 통합적인 의미로 서로 연관될 수 있다. 즉 삼균주의에서 균등이란 평등한 기회의 보장함으로써 전제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모든 주체가 어떠한 것을 수행할 평등한 기회와 그것을 수행할 능력에 필요한 것들을 향유하며, 외부적 방해 없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분배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근대 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바, 비교사상사적 관점에서 삼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균주의가 정치·경제와 동등한 위상으로 교육 불평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교육이 대내적으로는 봉건적 신분체제를 극복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자주독립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양면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균등론은 당대의 시대적 과제였던 이중의 모순을 적절히 간파한 문제제기이자 혁명적 방법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삼균주의는 해방 이후 역사적 격랑 속에서 남북 어느 곳에서도 지도이념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비록 현행 헌법 곳곳에 남아있는 ‘균등’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원래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담지한 채 유지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소앙의 균등 개념은 현재 시점에 맞게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급부상한 인정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특별한 배려는 삼균주의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로써 인정적 표지를 사유로 정치·경제·교육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거나 차별구조가 고착화된 경우 균등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균등은 실질적 평등의 요청을 포함하며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한다. 특히 역량접근법은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도 국가 개입의 목표를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등 개념과 접점을 생성한다. 이처럼 역량 접근법은 자유와 평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균등 개념을 지지·확장할 수 있다.

현대적으로 확장 해석된 ‘균등’ 개념은 현행헌법상 균등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 능력에 따른 차별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이른바 능력주의(meritocracy)적 해석을 도입하고 있는데(2016헌마649), 이는 균등한 교육의 제공을 마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 채용 기준인 능력주의와 동일하게 해석함으로써 취지와 목적이 다른 두 제도에서 ‘능력’ 개념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균등 개념에 입각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능력주의에 따른 교육자원의 차등 분배를 명한 조항으로 읽어내는 것은 조소앙이 강조한 교육균등의 개념과 역사적 기초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제2절 결론

일찍이 논어에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걱정한다)’²³³⁾이라고 하였듯이, 균등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정의론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은 같을지라도, 균등의 대상과 범위, 균등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등 그 내용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을 가졌으며, 그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단순히 민중의 염원으로부터 체계적 정의론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조소앙은 역사와 전통에서 나타난 균등의 여러 모습들을 검토하고, 균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당대의 모순과 부정의를 인식하는 한편, 당대의 사상적 조류를 집대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사상인 삼균주의를 창안하였다. 이로써 조소앙은 현대의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균등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의 헌법사상인 삼균주의는 건국강령을 교두보 삼아 제헌헌법에 규범화되었으며, 현행헌법에도 그 흔적은 비교적 뚜렷이 남아있다.

이 논문은 역사적 사상을 현재의 담론에 조응하여 재구성한 후 이를 헌법 해석론으로 발전시키는 통합적 연구를 시도해보았다. 일차 자료를 통해 임시정부기와 해방기에 형성·수용되었던 조소앙의 헌법사상을 재구성하고, 현대의 인정적 평등 및 실질적 평등과 마주치는 접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헌법상 균등 개념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이제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국가는 부정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반드시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233) 공자, 「논어」 계씨 편 1장, 청아출판사, 2014, 318면. 원문은 子曰“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으로서, 공자가 말하기를 “나라를 가진 사람은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음을 근심한다.”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 글은, 삼균주의의 균등 개념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균등 개념이 현행헌법에 대한 해석방법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밝히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현행헌법상 균등 개념이 미치는 범위에서 기본권이라는 수단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평등을 구현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균등이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진다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나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조직과 활동에 방향성과 지침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³⁴⁾

평등을 향한 열망은 가장 불평등한 시대에 가장 강해지고, 정의에 대한 요구는 가장 부정의한 시대에 가장 크게 분출된다. 조소앙이 일생을 보낸 일제강점기는 국가와 민족, 개인의 모든 차원에 차별받고 예속되어 자유롭게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불행한 시기였다. 그러한 부정의의 시대에 분출했던 평등에 대한 열망이 균등이라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평등 개념을 만들어냈다.

조소앙의 시대로부터 약 백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부정의와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기세를 더해가는 듯하다. 자본주의가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의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불평등은 점차 심화된다.²³⁵⁾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계층 간 이동성과 경제적 역동성을 제한하며, 소비수요의 부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²³⁶⁾ 절대적인 소득이나 발전 수준보다 불평등의 정도 자체가 사람의 건강이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²³⁷⁾ 경제적 불평등만이 문제의

234) 우리 헌법 해석상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요청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작용에 대해 법률유보나 과잉금지원칙을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12면 참조.

235)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참조.

236)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2013 참조.

237) 키스 페인 지음, 이영아 옮김, 「부러진 사다리-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전부가 아니다. 정치에는 좀처럼 소수자의 목소리가 닿지 않고, 교육은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시대에는 ‘차별의 배제’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균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헌법 해석론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현행헌법상 ‘균등’ 문언을 재해석하여 삼균주의 균등 개념의 의미를 오늘날에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균등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로 이해하고 균등 개념에 기반하여 헌법을 해석하게 되면, 조소앙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는 헌법의 규범력을 통해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불평등한 시대에 헌법은, 민주적 균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상 정치독립에만 심취하던 맹목적 운동은 이미 과거에 속한 운동이다. 우리는 독립의 형식 속에 혁명의 본질을 내포하며, 혁명의 형식 속에 민주적 균등을 내포하며, 민주적 형식 위에 과학적으로 구체화한 실제 시설으로써 정치·경제·교육의 실익을 인민 각개에 균등하게 향수하도록 강렬하게 주장하며 역행(力行)하는 중이다.²³⁸⁾

와이즈베리, 2017 참조.

238)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한국독립당 제1차 전당대표회의 선언’, 「소앙선생문집 上」, 햇불사, 1979, 278면.

[별지1]

임시정부 및 해방기 헌법문서와 삼균주의²³⁹⁾

	조소앙 관여 또는 영향	삼균주의 내용
1919. 4. 11. 임시헌장	조소앙 단독 작성	
1940. 10. 9. 임시약헌	개정작업 주도 추정	
1941. 11. 28. 건국강령	조소앙 단독 작성	삼균주의에 입각한 정치·경제·교육제도, 생활권 우위의 기본권 규정
1944. 4. 22. 임시헌장	약헌개정위원장 역임	
1946. 1. 임시약법(시안)	조선민족혁명당 계열 주도, 조소앙이 작성한 민족혁명당 강령 영향	
1946. 3. 18. 임시정책대강	민주의원 주도	삼균주의에 입각한 정치·경제·교육제도, 건국강령 반영
1946. 3. 민주의원 임시헌법	헌법기초위원으로 참여	생활권 우위의 기본권 규정
1946. 3. 1. 행정연구위원회 한국헌법	신익희 주도, 임시헌장(1944) 영향	
1947. 8. 6. 조선임시약헌	민주의원 임시헌법(1946) 영향	생활권 우위의 기본권 규정
1948. 유진오 헌법초안	유진오가 참고한 10종의 문서들 가운데 조소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 3개(건국강령, 임시헌법, 한국독립당·민족혁명당 강령), 조소앙 작성 헌법문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 3개(조선임시약헌, 한국헌법, 임시약법)	

239) 신우철, 임시정부가 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44-45면 및 58-62면 참조.

[별지2]

제헌헌법 이후 균등 문언의 변천

	전문	정치	경제	교육	
제헌헌법	각인의 기회를 균등 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을 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으로 삼는다.	모든 국민은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52년 헌법					
1954년 헌법					
1960.6. 헌법					
1960.11. 헌법					
1962년 헌법	각인의 기회를 균등 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을 기하고	<u>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u> 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 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u>따라</u>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69년 헌법					
1972년 헌법	각인의 기회를 균등 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을 기하고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추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추가)
1980년 헌법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추가) 중소기업 보호·육성(추가)

<p>현행헌법</p>			<p>국가는 <u>균형</u>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u>적정한 소득의 분배</u>를 유지하고, <u>시장의 지배</u>와 <u>경제력의 남용</u>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u>경제의 민주화</u>를 위하여 <u>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u>을 할 수 있다.</p> <p>독과점(삭제)</p>	
-------------	--	--	---	--

참 고 문 헌

1. 1차 사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권(임정편 II, 1971), 3권(임정편 III, 197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권(임시의정원 I), 3권(임시의정원 II), 4권(임시의정원 III)

국회속기록: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한민국건국강령(1941. 11. 28.) - 임시정부의정원문서, 국회도서관, 1974, 21-25면.

조소앙 지음, 삼균학회 편역, 「소앙선생문집 上·下」, 햇불사,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 추진위원회 편,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집: 조소앙편 1권, 2권, 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1997

2. 단행본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_____, 「조소앙이 꿈꾼 세계」, 지영사, 2003

김도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아카넷, 2020

김삼용, 「조소앙 평전」, 채륜, 201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돌베개, 2013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 I」, 박영사, 2013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 [법원, 경제질서 등] 제101조~제 130조」, 경인문화사, 2018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 _____, 「헌법해의」, 명세당, 1951
- 윤세창, 「신고 헌법」, 일조각, 1963
-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 지성사, 2019
-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4
-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생각의힘, 2020
- 조소양, 김보성·임영길 옮김, 「소양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 조소양, 이정원 옮김, 「유방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 추헌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한수웅, 「헌법학」 (제11판), 법문사, 2021
- 한태연, 「(신고)헌법」, 법문사, 1963
- _____, 「헌법학」, 법문사, 1973
- 홍선희, 「조소양의 삼균주의 연구」, 부코, 2014
- 아마르티아 쉐 지음, 정미나 옮김,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21세기북스, 2018
- _____, 「The Idea of Justice」, Penguin Books, 2010 [아마르티아 쉐 지음, 이규원 옮김, 「정의의 아이디어」, 지식의 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2019]
- 악셀 호네트 지음,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아이리스 매리언 영 지음, 김도균·조국 옮김,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 조지프 피시킨 지음, 유강은 옮김, 「병목사회」, 문예출판사, 2016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2013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존 롤스 지음,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03]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Nancy Fraser et al, ed. Kevin Olson, 「Adding Insult to Injury: Nancy Fraser Debates Her Critics」, Verso, 2008 [낸시 프레이저 외 지음, 케빈 올슨 엮음, 문현아·박건·이현재 옮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그린비, 2016]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지음, 김원식·문성훈 옮김,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사월의책, 2014

Sandra Fredman, 「Discrimination Law」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_____, 「Human Rights Transformed: Positive Rights and Positive Du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3. 학술논문

강정인·권도혁,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균등’개념의 분석 및 균등과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집 1호, 2018, 257-276면

김기승,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제8집 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9, 27-43면

- 김인식, '삼균주의·「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임시정부 절대옹호론',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제66호, 2011 325-362면
- _____,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민족혁명론', 한국인물사연구 제16집, 2011, 261-299면
-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1-38면
- 김지혜,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교육의 불평등', 법과사회 제53호, 2016, 159-184면
- 김하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과 내용',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6, 335-374면
- 박명림, '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건국 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429-454면
- 박찬승, '종족 마을 간의 신분 갈등과 한국전쟁: 부여군 두 마을의 사례', 사회와 역사 제69집, 2006, 5-41면
- 박창언,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의 해석: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83-208면
- 배경한, '삼균주의와 삼민주의', 중국근현대사연구 제15권, 중국근현대사학회, 2002, 1-16면
- 삿사 미츠아키, '조소앙의 대동사상과 아나키즘-「육성교(六聖教)」의 구상과 「한살임(韓薩任)」의 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제40집, 2016, 221-246면
- 서희경·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30집 제1호, 2007, 77-111면

- 성낙인,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 133-161면
- 송석윤, '조소앙의 헌법사상-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헌법학연구 제
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 123-166면
- 신우철, '건국강령(1941. 10. 28) 연구-'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63-97면
- _____,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43-68면
- _____,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법사
학연구 제29호, 2004, 5-57면
- 여경수,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민주법학 제48호, 2012,
277-303면
- 윤홍근, 삼균학회 편역, '소앙사상에 있어서 균등개념의 연구', 「삼균주
의론선(三均主義論選)」, 삼성출판사, 1990, 139-164면
- 이상익, '조소앙 삼균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이념적 성격', 한국철학논집
제30집, 2010, 87-121면
- 이영록,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헌법학연구 제
19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3, 69-97면
- _____,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논총 제24호, 2017
- 전중익,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서울
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2013, 1-51면
- _____, '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공법
연구 제41집 제1호, 2012, 197-225면
- _____, '정조시대 천주교 전래와 평등', 법사학연구 제40호, 2009,
105-137면

- 정 훈, '교육 정의의 내용에 대한 시론적 고찰: Fraser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31권 제1호, 2017, 137-158면
- 조범래, '한국독립당연구(1930-1945)',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59-198면
- 조석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수립의 꿈과 그 좌절', 국제경상교육연구 제6권 제4호,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2009, 87-113면
- 한수용,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19권, 2008, 5-46면
-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2009, 167-201면
-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삼균주의', 사학지 제49집, 2014, 297-318면
-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3
- 홍호선, 삼균학회 편역, '조소앙의 교육균등론', 「삼균주의론선(三均主義論選)」, 삼성출판사, 1990, 280-355면
- 황승흠,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탄생 배경과 법적 성격 논쟁', 노동법연구 제3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1-44면
- _____,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011, 549-589면
- 에른스트-볼프강 뵘첸회르데, 김효전 편역, '헌법해석의 방법-재고와 비판', 「독일 헌법학의 원천」, 산지니, 2018, 179-207면

Sandra Fredman, 'Substantive Equality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ume 14, Issue 3, July 2016, p.712-738

4. 보고서

이혜영·윤종혁·류방란,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Ⅱ): 일제 강점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7

5. 기타 자료

'가슴 아픈 초등학교 입학문제', 1936. 5. 17.자 동아일보 기사.

'독립운동가 조소앙 3·1절 기념사 육성 복원 성공...최초 공개', 2019. 2. 27.자 연합뉴스 기사

조철행,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 내일을 여는 역사 봄·여름 통합호, 2001, 118면.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Equalization
in Korean Constitution
– In Relation to Cho So-Ang’s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

Yoo Kyung–min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Constitution uses the word “equalization” four times in all. First of all,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reiterate the emphasis on equalization by “...Equalize the opportunities of every person in all field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Inside, we are trying to equalize improvement of our lives.”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be educated equally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Article 31(1)), and that “Election campaigns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management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within the limit set by Act. But equalized opportunity shall be guaranteed” (Article 116(1)). In addition, the

economic chapter uses the word “balance” five times, although it does not use the term “equalize,” emphasizing balanced development among economic players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use of the land (Article 119(2), 120(2), 123(4)).

The Concept of equalization that is a core value specified in the preambl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re-emphasized in education, election provisions and economic chapters, can be found in Cho So-Ang's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It is surprising that the study of political philosophy, legal philosophy, and constitutional thought about the meaning of equalization were meager considering that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was adopted as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and much of it was reflected in the first constitution, leading to the phrase “equalizat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concept of equalization that have not yet been explored in earnest or actively interpreted and seek its use.

Japanese colonial era, where Cho So-Ang formed and established the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is the era that we lost national sovereignty due to Japanese imperialist's invasion, and the people were subjected to political abuses, economic exploitation, and educational oppression. At that time, independence activists faced two contemporary tasks: restoring national sovereignty from Japan on the one hand and revolutionizing feudalistic customs on the other. Cho So-Ang re-established the ideology of independence movement and foundation a country as a language of discrimination and equality by recognizing these issues as a matter of discrimination in three areas: political, economic, education and three layers: individual, ethnic, national. Chapter 2 identifi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concept of “equalization” emerged under the Constitution by tracking the process of forming and establishing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by Cho So-Ang and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reflected in the “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1941) and Korean constitution(1948).

However,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was not implemented as a dominant ideology anywhere in the North and South amid the historical turmoil after liberation. Although the term “equalization” can be found throughout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hard to say that it has been maintained fully with the practical meaning that Cho So-Ang originally intended to realize through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Chapter 3 examines how the concept of equalization can be understood by attempting a unified interpretation of equalization concepts based o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and looking over the educational equalization that Cho So-ang particularly emphasized. It also explores ways to revive the historical meaning of equalization by confirming that the concept of equalization in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can capture much of the demands of recognition equality and substantive equality, which can be called the spirit of the times. This is also the starting point for the work to revive the phrase “equalization” that has been solidified like fossil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has lost its original meaning. Finally, It explore the implications of interpreting the current constitution through the concept of equalization.

The desire for equality becomes strongest in the most unequal ages, and the demand for justice erupts most in the most unjust ages. Japanese colonial era, where Cho So-Ang spent his life, was an unfortunate time of discrimination and subjugation in all

dimensions of individual, ethnic, national, and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 Just as the desire for freedom and equality that erupted in such an age of negativity has created a systematic theory of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I hope that rediscovery the concept of equalization in constitution can be taken as a timely approach today, which is the era of unprecedented inequality throughout world history.

**keyword : equalization, Cho So–Ang, Three Equalization Principle,
substantive equality**

Student Number : 2017–22187